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감사인 유형과 비감사서비스 유형을 중심으로*

라현주(주저자)

송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 한울회계법인 부대표
(hjra1965@naver.com)

김용수(공저자)

송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 송실대학교 강사
(ysk4u@ssu.ac.kr)

전규안(교신저자)

송실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kajeon@ssu.ac.kr)

.....

감사인이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없지만 주요 국가에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적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시켜 감사품질을 저하시킨다는 부정적인 연구결과와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과 감사품질은 관련이 없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1,601개 기업/연도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동일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동시 제공과 감사보수로 측정된 감사품질 간의 관계에 감사인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비감사서비스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감사인 유형을 *Big4* 감사인 여부 이외에 실무상 감사인 특성을 고려한 ‘*One firm*’ (“*One firm*” 유형의 감사인 중 *Big4* 이외의 감사인)’ 감사인 여부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기준이 되는 감사인 그룹에 따른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비감사서비스의 유형을 세무서비스와 비세무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은 감사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은 감사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동일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Big4*와 *One firm*은 감사보수가 증가하였으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시 가장 큰 감사인으로 분류되는 회계법인(*GR1*) 중 *Big4* 이외의 회계법인(*DSS*)과 두 번째 그룹의 회계법인(*GR2*)은 감사보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SS*와 *GR2*의 경우에 감사보수와 관련이 없는 반면에 *Big4*와 *One firm*의 경우에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결과는 *Big4*와 *One firm* 감사인이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과 감사보수 간의 관계에 감사인 유형이 미치는 영향은 비감사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Big4*는 세무서비스와 비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감사보수가 증가하였으며, *One firm*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감사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인의 품질관리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한 회계법인 대형화가 아니라 자금·회계·업무 수입을 법인차원에서 통합관리 및 집행하는 “*One firm*” 유형 감사인의 육성을 지원하고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며, 비감사서비스의 유형(세무서비스와 비세무서비스)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비감사서비스, 감사품질, 감사인 유형, 비감사서비스 유형

최초투고일: 2015. 10. 8 게재확정일: 2015. 12. 15

* 본 논문은 첫 번째 저자의 송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저자는 박사논문 심사위원이신 이종천 교수님, 이용규 교수님, 오용락 교수님, 전규안 교수님(송실대)과 박종성 교수님(숙명여대)께 감사드립니다.

1. 서론

2001년말 미국 엔론(Enron) 사건 이후 미국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감사인이 감사용역과 동시에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해상충으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여 2002년 사베인-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을 제정하였다.¹⁾ 엔론사건은 회계업계의 큰 분수령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11월 공인회계사법과 회계감사기준을 개정하여 2004년 이후 일정한 비감사서비스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게 특정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일부 비감사서비스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감사인이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Frankel, Johnson & Nelson(2002)의 초기 실증 연구 이후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 변경이 재정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등 감사품질 재검증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한편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감사보수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감사보수가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감사품질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갖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 채

택한 *Big4* 또는 *non-Big4* 감사인 유형 구분과 달리, 본 연구는 현행 실무상 감사인 특성을 고려한 '*One firm*' 감사인 여부 구분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지정시 기준이 되는 감사인 유형 구분에 따라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감사인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세무서비스와 비세무서비스로 구분하여 비감사서비스 유형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감사인의 유형구분에서 *Big4* 감사인 여부를 중요시 했으나, 실무에서는 '*One firm*' 감사인 유형 구분이 중요시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회계학회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2011년에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평가항목은 "1. 자금·회계·업무수입의 관리형태(20점)", "2. 품질관리(40점)", "3. 업무수행(40점)",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핵심은 "법인차원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 경영진에 의한 품질관리 체계의 구축·운영과 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행"되므로 "자금·회계·업무 수입을 법인차원에서 통합관리 및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상당수 회계법인에서 자금, 회계, 업무 수입 등의 업무가 팀별 또는 이사별로 별도로 관리되어 법인차원의 통합관리(모니터링, 사후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One firm* 체제를 갖춘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과 금융회사를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²⁾ 따라서 본 연구는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Big4* 감

1) Arthur Andersen은 엔론으로부터 감사수임료 2,500만 달러를 받은 반면, 컨설팅 대가로 이보다 많은 2,700만 달러를 받음으로 인해 이해상충의 문제에 직면하여 엔론의 분식회계를 방조했다는 지적이 있다(권수영·손성규·이은철, 2004).

2) 한국회계학회(2011.12.6.),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사인 여부 이외에 *One firm* 감사인 여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³⁾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시에는 감사인의 특성 중 소속공인회계사 수, 설립경과연수, 매출규모, 손해배상능력, 외국법인과의 제휴현황 등을 고려하고 감사인의 경력 및 국제적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 체결 여부를 반영한 감사인점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⁴⁾ 또한 현행 감사인 지정방법은 상대적으로 감사리스크가 큰 감리회사 등은 *non-Big4*에, 감사리스크가 적은 공개예정기업 등은 *Big4*에 많이 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⁵⁾ 현행 감사인지정제도는 감사인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항목이 소속공인회계사의 수와 감사인의 경력 등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어서 대형화된 회계법인에게 유리하며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관리 결과 등 회계법인의 품질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Big4* 감사인 여부 이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방법에 의한 감사인 구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은 감사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은 감사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동일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Big4* 및 *One firm* 감사인은 모두 감사보수와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서 *Big4* 및 *One firm* 감사인은 모두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셋째,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비감사서비스의 유형(세무서비스와 비세무서비스)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비감사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을 감사품질 제고의

3) 본 연구에서는 'One firm' 감사인을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감사인으로 정의하였다. 첫째, 독립적인 심리실 운영(전업 공인회계사로 구성)을 통해 감사품질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 감사인의 채용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감사인력 및 감사품질을 유지하고, 감사시간 집계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감사품질 평가 및 이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체계(감사업무 배분, 중앙급여 및 성과급 채택 등)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셋째, LOS(Line of Service) 체계 구축(감사업무 전문화, Chinese Wall 등)과 독립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감사수입절차 강화 등 업무 수입에 대한 법인 차원의 통합관리 및 위험관리를 통해 회계법인의 명성손실(Reputation Loss) 최소화를 도모하고, 소송위험(Litigation Exposure)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다섯째,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와 회계업무에 대한 법인 차원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Big4 감사인과 성도, 충정, 중앙, 천지, 예일, 이현회계법인(총 10개 회계법인)을 'One firm' 감사인으로 선정하였다. 이 회계법인들은 위의 조건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심리실장회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One firm' 감사인으로 인정되는 회계법인들이다. 'One firm' 감사인이 아닌 감사인을 '독립채산제' 감사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4)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감사인점수를 기준으로 감사인을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감사인점수는 기본점수(회계법인 내의 공인회계사 수와 경력을 기준으로 산출)와 가점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구분에 의한 감사인을 그룹1(GR1, Big4 회계법인과 3개의 대형회계법인), 그룹2(GR2) 및 기타의 회계법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감사인 구분은 2013년말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시 이용되는 실제 감사인 구분기준이다.

5) 황인태·강성민, 2015, 지정감사에 대한 배정방법 개선방안, 한국회계학회 심포지엄.

6) Big4 회계법인은 당연히 "One firm" 유형의 회계법인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Big4를 제외한 6개의 One firm 유형의 회계법인(성도, 충정, 중앙, 천지, 예일, 이현회계법인)을 'One firm'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기회로 삼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인의 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의 단순한 대형화가 아닌 자금, 회계, 업무 수입 등의 업무가 법인차원에서 통합관리(모니터링, 사후관리) 되는 *One firm* 감사인 체제로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감사인이 제공하는 비감사서비스의 유형(세무서비스와 비세무서비스)에 따라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비감사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세부 유형(세무서비스 또는 비세무서비스 등) 구분에 의한 차별화된 규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Ⅱ장에서는 연구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연구설계 및 표본을 선정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결론과 본 연구의 공헌점을 제시한다.

II.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2.1 연구배경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없으나 주요 국가에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적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비감사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⁷⁾ 국내에서도 2004

년부터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자기감사위협 의 우려가 있는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은 금지하되, 그렇지 않은 비감사서비스 제공은 허용(조건부 허용 포함)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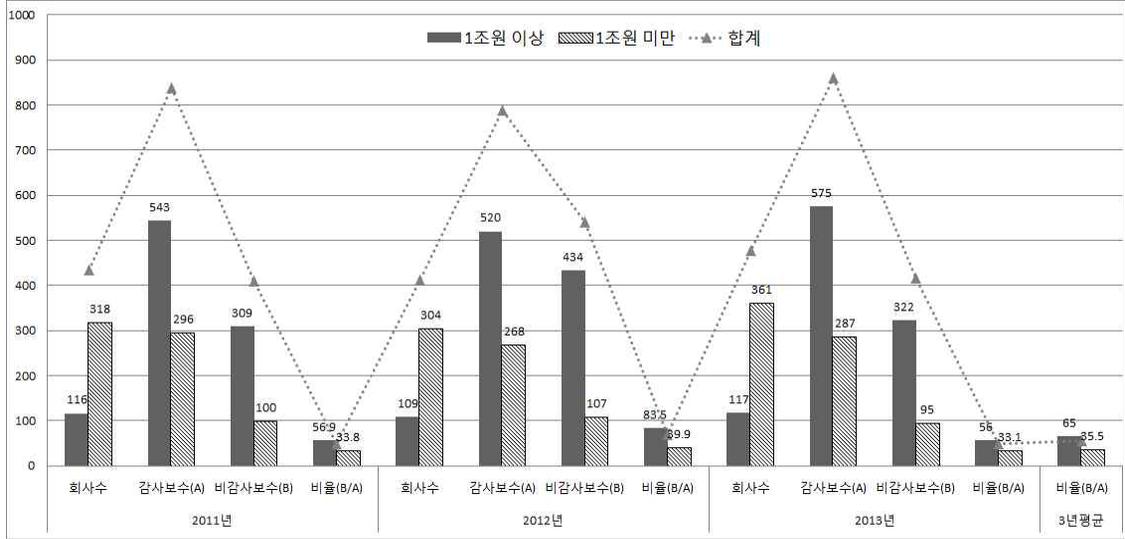
금융감독원이 2014년 6월 상장회사 1,726개사(특수목적법인 등 106개사 제외)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이 제공한 비감사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은 회사 수는 478개사이며 감사보수 대비 비감사서비스 보수비율은 3년간 평균 약 55% 수준을 보였다. 특히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대형회사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비감사서비스 보수비율이 약 65%로서 전체 평균을 10% 가량 상회하는 높은 결과를 보였다(〈그림 1〉 참조).⁹⁾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은 피감사회사는 478개사로 전체의 27.7%이며 이는 전년도의 24.6% 대비 약 3% 증가한 것이고 최근 3년 평균(약 26%)보다 약간 상회하는 결과이다. 한편 2013년 감사인을 통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은 478개사의 감사보수는 862억원, 비감사서비스보수는 417억원으로 감사보수 대비 비감사서비스 보수비율은 48.4%이며 최근 3년 평균은 대략 55% 수준이다. 특히 2013년 비감사서비스보수를 감사보수보다 많이 지출한 회사는 478개사의 8.6% 수준인 41개사에 이른다. 회사 규모별 현황을 보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회사의 경우 비감사서비스 보수비율이 2013년에는 전년 대비 약 28% 감소한 약 56%이며 최근 3년 평균은 약 6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7) 미국에서는 감사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 외부감사인의 피감사회사 임직원 역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미국과 유사한 업무를 금지하고 추가적으로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비감사서비스 보수를 감사보수의 70% 이내로 제한(2016.6.16. 시행 예정)하고 있다.

8) 국내에서 감사용역과 동시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비감사서비스는 ①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②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③ 재무정보 체계의 구축 또는 운영, ④ 자산 매도 관련 실사·가치평가 용역 등이며, 감사용역과 동시 제공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는 비감사서비스는 세무업무, 경영전략 컨설팅, 자산 매수 관련 실사·가치평가 등이다.

9) 금융감독원(2014.6.26. 보도자료), 최근 3년간 상장회사의 비감사용역보수 현황 분석(<http://www.fss.or.kr>).

(단위: 사, 억원, %)



〈그림 1〉 회사규모별 비감사용역보수비율 현황

보이고 있다. 자산 1조원 미만 회사의 경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약 7% 감소한 약 33%이며 그 이전에도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자산 1조원 이상 대형회사 중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국내 상장회사(6개사)¹⁰⁾의 경우에는 비감사서비스 보수비율이 최근 3년 평균 약 11%로 자산 1조원 이상의 다른 대형회사의 65% 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등이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는 것을 엄격히 견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2 선행연구의 검토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품질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선행연구들은 감사품질의 대응치로서 재량적 발생액, 감사시간, 감사보수 등을 이용하였다.

먼저,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피감사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어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재량적 발생액을 대응치로 사용한 감사품질이 하락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이 있다(Frankel et al., 2002; Dee, Lulseged and Nowlin 2002; 최원석·윤성만, 2010). 반면에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은 재량적 발생액과 관련성이 없어서 경제적 유대관계 형성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 저하로 인한 감사품질의 하락이 없다는 선행연구(Ashbaugh, Lafond

10) 신한금융지주, 포스코, 우리금융지주, SK텔레콤, KB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and Maydew, 2003; Chung and Kallapur, 2003)와 동일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은 재정적 발생액을 감소시켜 오히려 감사품질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권수영 외, 2004; 박종일 · 전규안 · 최종학, 2003)가 존재한다. 또한 정대길 · 송인만 · 박연희(2009)는 비감사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먼저, 최관 · 박종일(2009)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감사투입시간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주요 감사 고객에 대해 감사인은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여 양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홍준영 · 류지윤 · 윤성수(2006)의 연구도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투입시간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오히려 총감사시간, 특히 중 · 상위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Simunic(1984)은 감사인이 감사용역과 동시에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감사보수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들은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동시 제공에 따른 지식 이전효과(knowledges spillover)로 인해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보수가 인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분석결과는 감사보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lmrose(1986)는 감사용역만 제공한 경우와 감사인이 동시에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으로 구분하여 감사보수와 독립성을 분석한 결과, 회계 및 세무 관련 비감사

서비스 제공기업의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회계 및 세무 관련 비감사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는 경우 피감사회사의 감사위험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더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DeFond, Raghunandan and Subramanyam(2002)은 감사인의 계속기업에 관한 불확실성 감사의견과 동일 감사인이 피감사회사로부터 받은 총보수 중에서 비감사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은 감사인의 부정적인 경제적 유대와 관련성이 없으며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용(2003)은 감사보수를 이용하여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Big5, *non-Big5* 회계법인 구분 분석에서도 Big5는 유의적인 양(+)의 값, *non-Big5*는 유의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임에 따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지는 않았다. 신용준 · 김은 · 권현주 · 김호중(2010)의 연구는 감사와 동시에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감사보수와 감사보수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하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생성을 통제한 2SLS(two-stage least squares)의 결과에서는 감사보수와 비감사보수 사이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박범진(2012)은 비감사서비스 유형과 이익유연화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감사서비스 제공은 이익유연화와 감사보수 간의 관련성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박범진 · 배기수(2013)의 연구에서도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비정상감사보수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정 감사보수보다 더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 것으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이명곤·이세철(2006)의 연구에 의하면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비정상감사보수가 증가할수록 경영자의 보고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이익조정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감사서비스와 감사보수의 관련성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동일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감사보수가 증가하며, 감사보수의 할인이나 비감사서비스보수로의 이전이 없고, 감사품질이 향상된다는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감사인 유형에 따른 감사품질의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DeAngelo(1981)는 고객의 특정한 회계기록 위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 고객의 수가 더 많은 대형 감사인은 중소형 감사인보다 더 많은 준지대를 잃을 것이기 때문에 대형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중소형 감사품질보다 우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는 달리 *Big4* 감사인 여부에 따른 구분 외에 *One firm* 감사인 여부에 따라 감사인을 구분할 수 있다. 국내에서 *One firm* 감사인 여부를 고려한 연구로는 이재은(2011)과 최진영·전영순·김문철·황문호(2013)가 있다. 이재은(2011)은 국내 감사인의 품질관리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금감원 품질관리감리 대상 및 외국회계감독기구에 등록된 감사인이 그렇지 않은 감사인보다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이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One firm* 감사인은 “독립채산제 유형” 감사인보다 실적조정 재량

적 발생액의 절댓값만이 유의하게 낮았다. 특히 *One firm* 유형의 *non-Big4* 감사인은 *Big4* 감사인보다 감사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영 외(2013)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품질관리감리 결과를 이용하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법인의 특성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글로벌 회계법인과 제휴관계를 맺을수록, *One firm*의 조직형태를 가질수록, 파트너의 비율이 높을수록, 소속 회계사 1인당 감사고객의 수가 적을수록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본 연구는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선행연구와 달리 감사인의 유형을 함께 고려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채택한 감사인 유형 구분(*Big4*와 *non-Big4*) 외에도 현행 실무상 감사인 특성을 고려한 *One firm* 감사인 여부 구분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고,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지정 기준이 되는 감사인 그룹에 따른 유형 구분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 유형을 고려하여 분석하면 일관된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Big 4* 감사인 여부 대신에 *One firm* 감사인 여부를 고려한 연구 중 이재은(2011)은 감사품질의 대응치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였고, 최진영 외(2013)는 감사품질의 대응치로 금감원과 한국회의 품질관리감리 결과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감사품질의 대응치로 감사보수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감사보수는 재량적 발생액에 비해 측정 오차의 문제가 거의 없으며, 품질관리감리결과와는 달리 이용자가 쉽게 이용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감사보수의 대응치로서 많이 이용되어 왔다.

셋째,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과 감사 보수 간의 관계에 감사인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비감사서비스의 유형(세무서비스와 비세무서비스)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I. 연구설계 및 표본선정

3.1 가설설정

감사인이 감사용역과 함께 세무나 경영컨설팅 등 비감사서비스를 피감사회사에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반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인이 부정이나 오류를 적발할 확률의 함수로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제고되는 경우 감사품질은 높아진다.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은 독립성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비감사서비스 제공으로 피감사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가 높아져 재무제표에 포함된 오류를 적발할 확률이 높아짐으로써 감사품질이 제고된다는 의견(지식이전효과, knowledge spillover)이 있는 반면,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어 외부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의 저하를 야기한다는 부정적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이세용(2003)과 신용준 외(2010)는 감사인이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

우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므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이명곤·이세철(2006)은 비정상감사보수가 증가할수록 보고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됨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동일 감사인에 의한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감사품질에 대하여 다양한 측정치를 이용하고 있다.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는 연구(권수영 외, 2004; 박종일 외, 2003; 심한택·손장익, 2005; 정대길 외, 2009; 최원석·윤성만 2010; Antle, gordon, Narayanamoorthy and Zhou, 2002; Ashbaugh et al., 2003; Chung and Kallapur, 2003; Dee et al., 2002; Frankel et al., 2002 등)와 감사시간을 이용하는 연구(최관·박종일, 2009; 홍준영 외, 2006), 감사의견을 이용하는 연구(손성규·이은철, 2005; Defond et al., 2002), 감사보수를 이용하는 연구(김명인·정민경·선우혜정, 2013; 이세용, 2003; 이명곤·이세철, 2006; 신용준 외, 2010; 박범진, 2012; Palmrose, 1986; Simunic, 1984) 등이 있다. 재량적 발생액은 측정오차가 존재하며, 우리나라에서 공시되는 감사시간은 공시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정태범·박희우, 2006), 우리나라에서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받는 기업이 거의 없는 등¹¹⁾ 감사품질을 나타내는데 모두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사품질의 대응치(proxy)로서 감사보수를 이용한다.¹²⁾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

11) 2014년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적정의견은 각각 99.6%와 98.6%이다.

12) 만일 감사보수가 증가하더라도 감사투입시간이 감소하면 오히려 감사품질은 감소할 수 있다. 황문호(2013)는 2004년부터 2008년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결과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한다.

가설 1: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은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감사인을 *Big4*, *non-Big4*로 구분하였으나, *non-Big4* 회계법인 중에서 하나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One firm* 유형의 회계법인과 그렇지 않은 회계법인(즉, 회계법인 내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회계법인)의 경우에,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 유형을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Big4* 여부의 구분뿐만 아니라 *One firm* 유형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특히 *One firm* 유형의 감사인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감사서비스 동시 제공시 감사보수가 증가하여 감사인 유형간 감사품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부실감사시 회계법인의 명성손실(Reputation Loss) 우려이다. 둘째, 소송위험(Litigation Exposure)에 따라 LOS (Line of Service) 체제를 갖춘 *One firm* 감사인의 경우 전체 조직 또는 비감사 LOS에서 감사부서의 위험 수용을 용인하지 않으며, 특히 *One firm* 감사인의 경우 회계감사 수입절차 및 내부 심리절차 등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셋째, *One firm* 유형의 경우 내부성과평가에 따라 감사부서의 감사보수 할인 유인이 적게 된다.

다음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 지정을 위

하여 이용되는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GRI*, *GR2*, 기타 감사인으로 감사인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감사인 지정시 이용되는 감사인 유형에 따라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 2를 설정한다.

가설 2: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은 감사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감사서비스 중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비세무서비스는 세무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에게 더 많은 가치(value)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 감사인이 비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감사인은 피감사기업과 경제적인 종속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보수의 협상력이 높아져서 감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런데 비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 간에는 전문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과 감사보수 간의 관계에 감사인 유형이 미치는 영향은 비감사서비스의 유형(세무서비스 또는 비세무서비스)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가설 3을 설정한다.

가설 3: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과 감사보수 간의 관계에 감사인 유형이 미치는 영향은 비감사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까지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의 특성이 감사보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계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투입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회계법인의 규모는 시간당 감사보수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배성미·김명인·안형태·지찬영(2014)에 의하면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도입된 2011년 이후에 감사시간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감사보수가 증가하면 적어도 감사보수의 할인으로 인한 감사품질의 하락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3.2 연구모형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박범진(2012)의 연구모형을 참조하여 식 (1)의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식 (1-1)은 감사인 유형을 *Big4*, *One firm*, 기타로 구분한 경우이고, 식 (1-2)는 감사인 유형을 *GRI*, *GR2*, 기타로 구분한 경우이다.¹³⁾ 관심변수인 *NonAS*의 회귀계수 β_1 이 유의적인 양 (+)의 값을 나타내면, 동일 감사인이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 감사보수로 측정된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것이고, 유의적인 음 (-)의 값을 나타내면 감사품질이 하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egin{aligned}
 AFee_t = & \beta_0 + \beta_1 NonAS_t + \beta_2 Big4_t + \beta_3 Onefirm_t \\
 & + \beta_4 lnAsset_{t-1} + \beta_5 Invar_{t-1} + \beta_6 Expr_{t-1} \\
 & + \beta_7 Liq_{t-1} + \beta_8 SalesGrw_{t-1} + \beta_9 LEV_{t-1} \\
 & + \beta_{10} ROA_{t-1} + \beta_{11} AssetGrw_{t-1} \\
 & + \beta_{12} Opinion_{t-1} + \beta_{13} Loss_{t-1} \\
 & + \beta_{14} FirstAudit_t + \beta_{15} LARGE_t \\
 & + \beta_{16} FORN_t + \beta_{17} KDQ_t + \beta_{18} SmallSIZE_t \\
 & + \beta_{19} OtherSIZE_t + \sum YD + \sum IND + \epsilon_t
 \end{aligned}
 \tag{1-1}$$

$$\begin{aligned}
 AFee_t = & \beta_0 + \beta_1 NonAS_t + \beta_2 GRI_t + \beta_3 GR2_t \\
 & + \beta_4 lnAsset_{t-1} + \beta_5 Invar_{t-1} + \beta_6 Expr_{t-1} \\
 & + \beta_7 Liq_{t-1} + \beta_8 SalesGrw_{t-1} + \beta_9 LEV_{t-1} \\
 & + \beta_{10} ROA_{t-1} + \beta_{11} AssetGrw_{t-1} \\
 & + \beta_{12} Opinion_{t-1} + \beta_{13} Loss_{t-1} \\
 & + \beta_{14} FirstAudit_t + \beta_{15} LARGE_t
 \end{aligned}$$

$$\begin{aligned}
 & + \beta_{16} FORN_t + \beta_{17} KDQ_t + \beta_{18} SmallSIZE_t \\
 & + \beta_{19} OtherSIZE_t + \sum YD + \sum IND + \epsilon_t
 \end{aligned}
 \tag{1-2}$$

- 여기서,
- AFee_t* : t년도 감사보수로써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측정;
 - lnAFee_t* = t년도 감사보수의 자연로그값;
 - abAFee_t* = t년도 비정상감사보수;
 - NonAS_t* : t년도 비감사서비스로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측정;
 - NonASD_t* = t년도 동일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으면 1, 아니면 0;
 - lnNASFee_t* = t년도 비감사서비스보수의 자연로그값;
 - Big4_t* = t년도 감사인이 *Big4*이면 1, 아니면 0;
 - Onefirm_t* = t년도 감사인이 *Onefirm* (성도, 충청, 중앙, 천지, 예일, 이현)이면 1, 아니면 0;
 - GRI_t* = t년도 감사인이 그룹1(*Big4*, *Big4* 제외 3개 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 GR2_t* = t년도 감사인이 그룹2(한울, 이촌, 우리, 성도, 신우, 다산, 삼화)이면 1, 아니면 0;
 - lnAsset_{t-1}* = t-1년도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 Invar_{t-1}* = t-1년도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비율 [(재고자산+매출채권)/총자산];
 - Expr_{t-1}* = t-1년도 수출비율;
 - Liq_{t-1}* = t-1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SalesGrw_{t-1}* = t-1년도 매출액 성장률[(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 LEV_{t-1}* = t-1년도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ROA_{t-1}* = t-1년도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평균총자산);
 - AssetGrw_{t-1}* = t-1년도 총자산성장률[(당기총자산-전

1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시 감사인을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그룹3과 그룹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두 그룹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룹3과 그룹4를 묶어서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기총자산)/전기총자산);
 $Opinion_{t-1}$ = t-1년도 감사의견이 적정이면 1, 아니면 0;
 $Loss_{t-1}$ = t-1년도 손실발생 기업이면 1, 아니면 0;
 $FirstAudit_t$ = t년도 초도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LARGE_t$ = t년도 보통주 대주주 1인 지분율;
 $FORN_t$ = t년도 보통주 외국인 지분율;
 KDQ_t = t년도 코스닥 상장기업이면 1, 아니면 0;
 $SmallSIZE_t$ = t년도 기업규모가 중소기업이면 1, 아니면 0;
 $OtherSIZE_t$ = t년도 기업규모가 기타기업이면 1, 아니면 0;
 ΣYD = 연도더미;
 ΣIND = 산업더미;
 ϵ_t = 잔차항.

피감사기업의 규모($\ln Asset$)는 총자산 규모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과 누락변수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비율($Invar$)과 총자산이익률(ROA)은 감사위험에 대한 변수로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수출비율($Expr$)은 해외매출 비중이 커질수록 감사업무의 복잡성이 증가하여 감사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유동비율(Liq)은 시장가치 및 안정성이 높을수록 감사위험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매출액성장률($Sales Grw$)과 총자산성장률($Asset Grw$)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통제하기 위해서 본 모형에 포함하였다. 부채비율(LEV)은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감사위험이 증가하여 감사보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감사의견($Opinion$)과 당기순손실($Loss$)은 감사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도감사여부($FirstAudit$)는 초도감사시 감사보수가 할인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대주주 1인의 지분율($LARGE$)과 외국인 지분율($FORN$)은 관련 이해관계자의 특성을 통제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코스닥상장 여부(KDQ)는 상장시장의 차이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중소기업 여부($SmallSIZE$)와 기타기업 여부($OtherSIZE$)는 감사보수에 미치는 기업규모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식 (2)와 같다.

$$AFee_t = \beta_0 + \beta_1 NonAS_t + \beta_2 Big4_t + \beta_3 Onefirm_t + \beta_4 NonAS_t \times Big4_t + \beta_5 NonAS_t \times Onefirm_t + Controls + \Sigma YD + \Sigma IND + \epsilon_t \quad (2-1)$$

$$AFee_t = \beta_0 + \beta_1 NonAS_t + \beta_2 GR1_t + \beta_3 GR2_t + \beta_4 NonAS_t \times GR1_t + \beta_5 NonAS_t \times GR2_t + Controls + \Sigma YD + \Sigma IND + \epsilon_t \quad (2-2)$$

$$AFee_t = \beta_0 + \beta_1 NonAS_t + \beta_2 Big4_t + \beta_3 DSS_t + \beta_4 GR2_t + \beta_5 NonAS_t \times Big4_t + \beta_6 NonAS_t \times DSS_t + \beta_7 NonAS_t \times GR2_t + Controls + \Sigma YD + \Sigma IND + \epsilon_t \quad (2-3)$$

$$AFee_t = \beta_0 + \beta_1 NonAS_t + \beta_2 Big4_t + \beta_3 Onefirm_t + \beta_4 DSS_t + \beta_5 sdGR2_t + \beta_6 NonAS_t \times Big4_t + \beta_7 NonAS_t \times Onefirm_t + \beta_8 NonAS_t \times DSS_t + \beta_9 NonAS_t \times sdGR2_t + Controls + \Sigma YD + \Sigma IND + \epsilon_t \quad (2-4)$$

여기서,

DSS_t = t년도 감사인이 그룹1 중 $Big4$ 를 제외한 3개 감사인(대주, 삼덕, 신한)이면 1, 아니면 0;

$sdGR2_t$ = t년도 감사인이 성도를 제외한 그룹2(한울, 이촌, 우리, 신우, 다산, 삼화)이면 1, 아니면 0;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식 (1)을 참조할 것.

식 (2-1)부터 식 (2-4)까지 관심변수인 $NonAS$ 와 각 감사인 유형의 상호작용항($NonAS \times [Big4, Onefirm, DSS, GR1, GR2, sdGR2]$)의 회귀계수가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내면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 각 감사인 유형($Big4, Onefirm, DSS, GR1, GR2, sdGR2$)의 감사품질이 기타 감사인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

마지막으로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식 (3)과 같다. 식 (3-1)부터 식 (3-4)까지 관심변수인 $TaxServ$ 와 각 감사인 유형의 상호작용항과 $NonTaxServ$ 와 각 감사인 유형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서로 다른 값을 나타내면,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 감사인 유형이 감사보수로 측정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비감사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begin{aligned} AFee_t &= \beta_0 + \beta_1 TaxServ_t + \beta_2 NonTaxServ_t \\ &+ \beta_3 Big4_t + \beta_4 Onefirm_t \\ &+ \beta_5 TaxServ_t \times Big4_t \\ &+ \beta_6 TaxServ_t \times Onefirm_t \end{aligned}$$

$$\begin{aligned} &+ \beta_7 NonTaxServ_t \times Big4_t \\ &+ \beta_8 NonTaxServ_t \times Onefirm_t \\ &+ Controls + \sum YD + \sum IND + \epsilon_t \quad (3-1) \end{aligned}$$

$$\begin{aligned} AFee_t &= \beta_0 + \beta_1 TaxServ_t + \beta_2 NonTaxServ_t \\ &+ \beta_3 GR1_t + \beta_4 GR2_t \\ &+ \beta_5 Tax.Serv_t \times GR1_t \\ &+ \beta_6 Tax.Serv_t \times GR2_t \\ &+ \beta_7 NonTaxServ_t \times GR1_t \\ &+ \beta_8 NonTaxServ_t \times GR2_t + Controls \\ &+ \sum YD + \sum IND + \epsilon_t \quad (3-2) \end{aligned}$$

$$\begin{aligned} AFee_t &= \beta_0 + \beta_1 TaxServ_t + \beta_2 NonTaxServ_t \\ &+ \beta_3 Big4_t + \beta_4 DSS_t + \beta_5 GR2_t \\ &+ \beta_6 Tax.Serv_t \times Big4_t \\ &+ \beta_7 Tax.Serv_t \times DSS_t \\ &+ \beta_8 Tax.Serv_t \times GR2_t \\ &+ \beta_9 NonTaxServ_t \times Big4_t \\ &+ \beta_{10} NonTax.Serv_t \times DSS_t \\ &+ \beta_{11} NonTax.Serv_t \times GR2_t + Controls \\ &+ \sum YD + \sum IND + \epsilon_t \quad (3-3) \end{aligned}$$

$$\begin{aligned} AFee_t &= \beta_0 + \beta_1 Tax.Serv_t + \beta_2 NonTax.Serv_t \\ &+ \beta_3 Big4_t + \beta_4 Onefirm_t \\ &+ \beta_5 DSS_t + \beta_6 sdGR2_t \\ &+ \beta_7 Tax.Serv_t \times Big4_t \\ &+ \beta_8 Tax.Serv_t \times Onefirm_t \\ &+ \beta_9 Tax.Serv_t \times DSS_t \\ &+ \beta_{10} Tax.Serv_t \times sdGR2_t \end{aligned}$$

14) 다만, 전체 감사인 유형을 분석한 식 (2-4)에서 성도회계법인인 $Onefirm$ 과 $GR2$ 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GR2$ 에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begin{aligned}
 & + \beta_{11}Non\ Tax\ Serv_t \times Big4_t & + \beta_{18}OtherSIZE_t + \sum YD \\
 & + \beta_{12}Non\ Tax\ Serv_t \times One\ firm_t & + \sum IND + \epsilon_t \quad (4) \\
 & + \beta_{13}Non\ Tax\ Serv_t \times DSS_t \\
 & + \beta_{14}Non\ Tax\ Serv_t \times sdGR2_t + Controls & abAFee_t = (\ln AFee_t^{Actual\ Value} - \ln AFee_t^{Predicted\ Value}) \\
 & + \sum YD + \sum IND + \epsilon_t \quad (3-4) & / \ln AFee_t^{Actual\ Value} \quad (5)
 \end{aligned}$$

여기서,

$Taxserv_t$ = t년도에 동일 감사인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으면 1, 아니면 0;

$Non\ Tax\ serv_t$ = t년도에 동일 감사인에게 비세무서비스를 제공받으면 1, 아니면 0;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식 (1)과 식 (2)를 참조할 것.

3.3 주요 변수의 측정

3.3.1 감사보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감사보수를 감사보수의 자연로그값 ($\ln AFee$)과 비정상감사보수($abAFee$)의 2가지 형태로 측정하였다. 여기서, 비정상감사보수는 박종일·최관(2009)의 방법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먼저, 식 (4)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정상감사보수를 추정한 후, 식 (5)와 같이 실제 감사보수에서 예측된 정상감사보수를 차감한 후에 이를 실제 감사보수로 나누어 비정상감사보수를 추정하였다.

$$\begin{aligned}
 \ln AFee_t = & \beta_0 + \beta_1 \ln Asset_{t-1} + \beta_2 CONS_t \\
 & + \beta_3 Invar_{t-1} + \beta_4 Expr_{t-1} + \beta_5 ISSUE_{t-1} \\
 & + \beta_6 Liq_{t-1} + \beta_7 LEV_{t-1} + \beta_8 Opinion_{t-1} \\
 & + \beta_9 ROA_{t-1} + \beta_{10} Loss_{t-1} \\
 & + \beta_{11} Sales\ Grw_{t-1} + \beta_{12} BIG4_t \\
 & + \beta_{13} First\ Audit_t + \beta_{14} LARGE_t \\
 & + \beta_{15} FORN_t + \beta_{16} KDQ_t + \beta_{17} Small\ SIZE_t
 \end{aligned}$$

여기서,

$CONS_t$ = t년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

$ISSUE_{t-1}$ = t-1년도 주식 및 사채발행 조달액의 절댓값(기초총자산으로 표준화);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식 (1)을 참조할 것.

3.3.2 감사인 유형의 구분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변수를 정의하였다.

- ① $Big4$ = 감사인이 $Big4$ 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
- ② $One\ firm$ = 감사인이 $One\ firm$ (성도, 충청, 중앙, 천지, 예일, 이현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
- ③ GRI = 감사인이 그룹1($Big4$, $Big4$ 제외 3개 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 ④ $GR2$ = 감사인이 그룹2(한울, 이촌, 우리, 성도, 신우, 다산, 삼화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
- ⑤ DSS = 감사인이 그룹1 중 $Big4$ 를 제외한 3개 감사인(대주, 삼덕, 신한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

3.3.3 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 ① 비금융업을 영위하고 관리대상이 아닌 12월 결산 기업
- ② 감사반이 감사한 기업 제외¹⁵⁾
- ③ 한국상장회사협회의 TS2000에서 감사용역 및 비감사서비스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기업

④ NICE평가정보(주)의 KISVALUE에서 재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업

⑤ 극단치(outliers)를 보이는 기업 제외¹⁶⁾

이렇게 선정된 최종 표본의 크기는 총 11,601개 기업/연도이다. 구체적인 표본선정의 과정과 최종표본의 산업별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표본 선정

Panel A: 최종 표본	
구 분	기업/연도
2002 ~ 2013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	22,920
관리대상기업	(648)
12월 결산기업이 아닌 기업	(1,932)
감사반	(182)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기업	(7,057)
극단치를 보이는 기업	(1,500)
최종 표본	11,601
Panel B: 산업별 표본 분포	
산업명	기업/연도
제조업	8,518
건설업	429
도매 및 소매업	943
운수업	20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9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7
기타	334
합계	11,601

15) 감사반은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법정요건을 갖춰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하는 조직이다. 일반적으로 감사반은 피감사기업의 규모와 감사품질이 회계법인과 다르기 때문에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16) 감사보수와 비감사보수 변수의 값이 상·하위 1%를 벗어나는 949개 기업/연도와 가설 2에 대한 검증모형인 식(2-1)을 회귀분석한 후 t-student의 절대값이 2를 초과하는 551개 기업/연도의 합인 총 1,500개 기업/연도를 표본에서 제거(truncate)하여 극단치를 조정하였다.

IV. 실증분석결과

4.1 기술통계량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먼저, 감사보수를 살펴보면 $\ln AFee$ 의 평균은 17.908, 중위수는 17.822이고, $abAFee$ 의 평균은 -0.004, 중위수는 -0.003이었다. 다음으로 비감사서비스를 살펴보면 $NonASD$ 의 평균은 0.261로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은 기업은 약 26% 정도였다. 그리고 $\ln NASFee$ 의 평균은 4.331이었다.

감사인 유형을 살펴보면 $Big4$ 의 평균은 0.554, $One\ firm$ 의 평균은 0.029이었고, GRI 의 평균은 0.681, $GR2$ 의 평균은 0.089이었으며, DSS 의 평균은 0.127이었으며, 비감사서비스 유형 중 $Tax.Serv$ 의 평균은 0.122이었고, $Non.Tax.Serv$ 의 평균은 0.139로 나타났다.

4.2 상관관계분석 및 차이분석결과

<표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감사보수 $\ln AFee$ 와 $abAFee$ 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었다. 다음으로 비감사서비스의 경우 $NonASD$ 와 $\ln NASFee$ 는 모두 $\ln AFee$ 및 $abAFee$ 와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감사인 유형을 살펴보면 $Big4$ 는 $\ln AFee$ 와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었지만, $abAFee$ 와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있었다. $One\ firm$ 은 $\ln AFee$ 와 유의적인 음

(-)의 관계, $abAFee$ 와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었다. GRI 은 $\ln AFee$ 와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었지만, $abAFee$ 와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있었다. $GR2$ 는 $\ln AFee$ 와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있었지만, $abAFee$ 와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었다. DSS 는 $\ln AFee$ 와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있었고, $abAFee$ 와는 비유의적이었다.

감사서비스 유형은 $Tax.Serv$ 와 $Non.Tax.Serv$ 모두 $\ln AFee$ 및 $abAFee$ 와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었다. 다만, 이러한 상관관계분석은 다른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의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구분한 감사인 유형별로 감사보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ln AFee$ 의 평균과 중위수는 ' $Big4 > One\ firm > DSS = sdGR2 = 기타$ '의 순으로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으로 차이가 났고, $abAFee$ 의 평균과 중위수는 $One\ firm$ 이 나머지 감사인들보다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많았다.

4.3 회귀분석결과

4.3.1 가설 1의 분석결과

<표 5>는 식 (1)을 이용하여 가설 1을 검증한 회귀분석결과이다.¹⁷⁾ 먼저, Panel A는 감사인 유형을 $Big4$, $One\ firm$, 기타로 구분한 경우이다, 이 중 Panel A-1은 관심변수가 비감사서비스 제공 여부인 경우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NonASD_t$ 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가 $\ln AFee_t$ 와 $abAFee_t$ 인 경우에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

17)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모든 회귀분석결과와 VIF값은 최대 8을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다.

〈표 2〉 기술통계량

(총 표본크기: 11,601개 기업/연도)

변수명	평균	1사분위수	중위수	3사분위수	표준편차
<i>lnAFee</i>	17.908	17.505	17.822	18.172	0.574
<i>abAFee</i>	-0.004	-0.110	-0.003	0.106	0.152
<i>NonASD</i>	0.261	0	0	1	0.439
<i>lnNASFee</i>	4.331	0	0	14.914	7.301
<i>Big4</i>	0.554	0	1	1	0.497
<i>Onefirm</i>	0.029	0	0	0	0.168
<i>GR1</i>	0.681	0	1	1	0.465
<i>GR2</i>	0.089	0	0	0	0.285
<i>DSS</i>	0.127	0	0	0	0.333
<i>TaxServ</i>	0.122	0	0	0	0.328
<i>NonTaxServ</i>	0.139	0	0	0	0.346
<i>lnAsset</i>	25.529	24.646	25.303	26.177	1.312
<i>Invar</i>	0.331	0.193	0.306	0.437	0.195
<i>Expr</i>	27.608	0.118	13.935	50.548	30.809
<i>Liq</i>	2.500	1.052	1.572	2.698	3.372
<i>SalesGrw</i>	0.131	-0.047	0.068	0.201	0.569
<i>LEV</i>	0.419	0.263	0.416	0.559	0.213
<i>ROA</i>	0.021	0.003	0.036	0.078	0.143
<i>AssetGrw</i>	0.125	-0.013	0.069	0.189	0.325
<i>Opinion</i>	0.997	1	1	1	0.046
<i>Loss</i>	0.227	0	0	0	0.419
<i>FirstAudit</i>	0.274	0	0	1	0.446
<i>LARGE</i>	41.279	29.330	40.710	52.490	16.589
<i>FORN</i>	6.022	0.050	0.810	6.090	11.384
<i>KDQ</i>	0.564	0	1	1	0.495
<i>SmallSIZE</i>	0.414	0	0	1	0.492
<i>OtherSIZE</i>	0	0	0	0	0.027

여기서, $AFee_t$: t년도 감사보수로서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측정:
 $lnAFee_t$ = t년도 감사보수의 자연로그값;
 $abAFee_t$ = t년도 비정상감사보수;
 $NonAS_t$: t년도 비감사서비스로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측정:
 $NonASD_t$ = t년도 동일 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으면 1, 아니면 0;
 $lnNASFee_t$ = t년도 비감사서비스보수의 자연로그값;
 $Big4_t$ = t년도 감사인이 Big4이면 1, 아니면 0;
 $Onefirm_t$ = t년도 감사인이 Big4를 제외한 Onefirm (성도, 충청, 중앙, 천지, 예일, 이현)이면 1, 아니면 0;
 $GR1_t$ = t년도 감사인이 그룹1(Big4, Big4 제외 3개 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GR2_t$ = t년도 감사인이 그룹2(한울, 이촌, 우리, 성도, 신우, 다산, 삼화)이면 1, 아니면 0;
 DSS_t = t년도 감사인이 그룹1 중 Big4를 제외한 3개 감사인(대주, 삼덕, 신한)이면 1, 아니면 0;
 $Taxserv_t$ = t년도에 동일 감사인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으면 1, 아니면 0;
 $NonTaxserv_t$ = t년도에 동일 감사인에게 비세무서비스를 제공받으면 1, 아니면 0;
 $lnAsset_{t-1}$ = t-1년도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Invar_{t-1}$ = t-1년도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비율[(재고자산+매출채권)/총자산];
 $Expr_{t-1}$ = t-1년도 수출비율;
 Liq_{t-1} = t-1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SalesGrw_{t-1}$ = t-1년도 매출액 성장률[(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LEV_{t-1} = t-1년도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ROA_{t-1} = t-1년도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평균총자산);
 $AssetGrw_{t-1}$ = t-1년도 총자산성장률[(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전기총자산];
 $Opinion_{t-1}$ = t-1년도 감사의견이 적정이면 1, 아니면 0;
 $Loss_{t-1}$ = t-1년도 손실발생 기업이면 1, 아니면 0;
 $FirstAudit_t$ = t년도 초도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LARGE_t$ = t년도 보통주 대주주 1인 지분율;
 $FORN_t$ = t년도 보통주 외국인 지분율;
 KDQ_t = t년도 코스닥 상장기업이면 1, 아니면 0;
 $SmallSIZE_t$ = t년도 기업규모가 중소기업이면 1, 아니면 0;
 $OtherSIZE_t$ = t년도 기업규모가 기타기업이면 1, 아니면 0;
 ΣYD = 연도더미;
 ΣIND = 산업더미;
 ϵ_t = 잔차항.

〈표 3〉 피어슨 상관관계분석결과

변수명	<i>lnAFee</i>	<i>abAFee</i>	<i>NonASD</i>	<i>lnNASFee</i>	<i>Big4</i>	<i>Onefirm</i>	<i>GRI</i>	<i>GR2</i>	<i>DSS</i>	<i>TaxSerev</i>	<i>NonTaxServ</i>
<i>lnAFee</i>	1										
<i>abAFee</i>	0.375***	1									
<i>NonASD</i>	0.193***	0.089***	1								
<i>lnNASFee</i>	0.217***	0.094***	0.996***	1							
<i>Big4</i>	0.331***	-0.034***	0.135***	0.146***	1						
<i>Onefirm</i>	-0.031***	0.048***	-0.009	-0.010	-0.193***	1					
<i>GRI</i>	0.264***	-0.037***	0.094***	0.102***	0.762***	-0.254***	1				
<i>GR2</i>	-0.103***	0.029***	-0.043***	-0.047***	-0.350***	0.288***	-0.459***	1			
<i>DSS</i>	-0.125***	-0.001	-0.069***	-0.075***	-0.426***	-0.066***	0.260***	-0.119***	1		
<i>axSerev</i>	0.068***	0.048***	0.627***	0.603***	0.066***	-0.008	0.033***	-0.036***	-0.052***	1	
<i>NonTaxServ</i>	0.180***	0.067***	0.675***	0.693***	0.108***	-0.003	0.088***	-0.020**	-0.038***	-0.150***	1

주1) 표본크기: 11,601개 기업/연도

주2)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2〉를 참조할 것.

주3) *** :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양측검정).

〈표 4〉 감사인 유형별 감사보수의 차이분석결과

구분	<i>Big4</i> (N=6,435)	<i>One firm</i> (N=340)	<i>DSS</i> (N=1,476)	<i>sdGR2_t</i> (N=848)	기타 (N=2,502)	차이분석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Duncan Grouping ³⁾				ANOVA (F값)	Kruskal-Wallis Test(χ^2)	
<i>lnAFee</i>	18.078 (17.989)	17.804 (17.793)	17.718 (17.717)	17.703 (17.665)	17.663 (17.642)	A	B	C	C	D	366.05***	1,252.23***
<i>abAFee</i>	-0.008 (-0.009)	0.038 (0.052)	-0.004 (0.001)	0.002 (0.002)	0 (0.005)	B	A	B	B	B	9.01***	37.45***

주1) N : 표본크기(기업/연도).

주2) $sdGR2_t$ = t년도 감사인이 성도를 제외한 그룹2(한울, 이촌, 우리, 신우, 다산, 삼화)이면 1, 아니면 0;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2〉를 참조할 것.

주3) 5%의 유의수준에서 A>B>C>D의 순서로 큼.

주4) *** :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양측검정).

타냈다. 이는 동일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 시 감사보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한다는 분석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 감사인이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감사보수가 비감사보수로 이전되지 않으며,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기

보다는 오히려 지식이전효과로 인해 감사품질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범진, 2012).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통계변수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가 $lnAFee_t$ 인 경우에 $lnAsset_{t-1}$, $Expr_{t-1}$,

〈표 5〉 비감사서비스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가설 1 검증)

Panel A: 감사인을 *Big4*, *Onefirm*, 기타로 구분한 경우

$$AFee_t = \beta_0 + \beta_1 NonAS_t + \beta_2 Big4_t + \beta_3 Onefirm_t + \beta_4 lnAsset_{t-1} + \beta_5 Invar_{t-1} + \beta_6 Expr_{t-1} + \beta_7 Liq_{t-1} + \beta_8 SalesGrw_{t-1} + \beta_9 LEV_{t-1} + \beta_{10} ROA_{t-1} + \beta_{11} AssetGrw_{t-1} + \beta_{12} Opinion_{t-1} + \beta_{13} Loss_{t-1} + \beta_{14} FirstAudit_t + \beta_{15} LARGE_t + \beta_{16} FORN_t + \beta_{17} KDQ_t + \beta_{18} SmallSIZE_t + \beta_{19} OtherSIZE_t + \Sigma YD_t + \Sigma IND_t + \epsilon_t \quad (1-1)$$

변수명	Panel A-1		Panel A-2	
	<i>lnAFee_t</i> Coef. (t-value)	<i>abAFee_t</i> Coef. (t-value)	<i>lnAFee_t</i> Coef. (t-value)	<i>abAFee_t</i> Coef. (t-value)
<i>Intercept</i>	9.319(98.07)***	0.370(7.08)***	9.338(98.32)***	0.380(7.28)***
<i>NonAS_t</i>	0.070(11.99)***	0.038(11.73)***	—	—
<i>lnNASFee_t</i>	—	—	0.004(13.04)***	0.002(12.67)***
<i>Big4_t</i>	0.094(16.99)***	-0.004(-1.62)	0.093(16.85)***	-0.005(-1.76)*
<i>Onefirm_t</i>	0.076(4.97)***	0.041(4.89)***	0.075(4.95)***	0.040(4.86)***
<i>lnAsset_{t-1}</i>	0.343(111.16)***	-0.014(-8.74)***	0.343(110.89)***	-0.015(-8.99)***
<i>Invar_{t-1}</i>	-0.020(-1.56)	0.047(3.99)***	-0.020(-1.55)	0.029(4.06)***
<i>Expr_{t-1}</i>	0.283(3.29)***	0.073(1.56)	0.282(3.28)***	0.073(1.55)
<i>Liq_{t-1}</i>	-0.029(-3.43)***	-0.005(-1.07)	-0.030(-3.45)***	-0.005(-1.08)
<i>SalesGrw_{t-1}</i>	0.031(4.67)***	0.004(1.23)	0.031(4.67)***	0.004(0.22)
<i>LEV_{t-1}</i>	0.213(13.03)***	-0.003(-0.35)	0.212(13.00)***	-0.003(-0.39)
<i>ROA_{t-1}</i>	-0.095(-4.06)***	0.013(1.05)	-0.095(-4.07)***	0.013(1.04)
<i>AssetGrw_{t-1}</i>	-0.109(-0.21)	-1.340(-4.70)***	-0.121(-0.24)	-1.346(-4.73)***
<i>Opinion_{t-1}</i>	-0.144(-3.00)***	-0.015(-0.57)	-0.143(-2.99)***	-0.015(-0.57)
<i>Loss_{t-1}</i>	0.011(1.50)	0(-0.21)	0.011(1.50)	0(-0.21)
<i>FirstAudit_t</i>	-0.052(-7.50)***	-0.001(-0.33)	-0.051(-7.44)***	-0.001(-0.26)
<i>LARGE_t</i>	-0.022(-14.25)***	0.003(4.13)***	-0.022(-14.22)***	0.003(4.18)***
<i>FORN_t</i>	0.035(14.17)***	-0.002(-1.89)*	0.035(14.08)***	-0.002(-1.98)**
<i>KDQ_t</i>	0.005(0.86)	-0.011(-3.28)***	0.005(0.86)	-0.011(-3.30)***
<i>SmallSIZE_t</i>	0.065(9.96)***	-0.007(-2.05)**	0.065(9.89)***	-0.007(-2.12)**
<i>Other.SIZE_t</i>	-0.411(-4.44)***	-0.273(-5.36)***	-0.415(-4.49)***	-0.275(-5.40)***
Σ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ΣIN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F-Value	1121.42***	15.32***	1124.95***	15.98***
\bar{R}^2	0.7767	0.0426	0.7772	0.0444

〈표 5〉 비감사서비스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가설 1 검증) (계속)

Panel B: 감사인을 *GRI*, *GR2*, 기타로 구분한 경우

$$AFee_t = \beta_0 + \beta_1 NonAS_t + \beta_2 GRI_t + \beta_3 GR2_t + Controls + \Sigma YD + \Sigma IND + \epsilon_t \quad (1-2)$$

변수명	Panel B-1		Panel B-2	
	<i>lnAFee_t</i>	<i>abAFee_t</i>	<i>lnAFee_t</i>	<i>abAFee_t</i>
	Coef.(t-value)	Coef.(t-value)	Coef.(t-value)	Coef.(t-value)
<i>Intercept</i>	9.239(96.67)***	0.371(7.11)***	9.261(96.96)***	0.382(7.32)***
<i>NonAS_t</i>	0.076(12.98)***	0.038(11.79)***	—	—
<i>lnNASFee_t</i>	—	—	0.005(14.08)***	0.002(12.72)***
<i>GRI_t</i>	0.065(10.10)***	-0.007(-2.02)**	0.064(10.04)***	-0.007(-2.08)**
<i>GR2_t</i>	0.021(2.10)**	0.011(2.05)**	0.021(2.12)**	0.011(2.06)**
<i>Controls</i>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Σ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ΣIN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F-Value	1099.51***	14.87***	1103.12***	15.53***
\bar{R}^2	0.7732	0.0413	0.7738	0.0431

주1) 표본크기: 11,601개 기업/연도

주2)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2〉를 참조할 것.

주3) ***, **, * : 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양측검정).

SalesGrw_{t-1}, *LEV_{t-1}*, *FORN_t*, *SmallSIZE_t*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수출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액성장률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중소기업일수록 감사업무의 복잡성과 감사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감사보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Liq_{t-1}*, *ROA_{t-1}*, *Opinion_{t-1}*, *FirstAudit_t*, *LARGE_t*, *OtherSIZE_t*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적인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총자산이익률이 높을수록, 감사의견이 적정일수록, 초도감사일수록, 대주주 1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타 기업일수록 피감사기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고, 감사보수의 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보수가 감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Invar_{t-1}*, *AssetGrw_{t-1}*, *Loss_{t-1}*, *KDQ_t*는 비유의적이었다.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abAFee_t*인 경우에 *Invar_{t-1}*, *LARGE_t*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의 비율이 높을수록, 대주주 1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비정상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lnAsset_{t-1}*, *AssetGrw_{t-1}*, *FORN_t*, *KDQ_t*, *SmallSIZE_t*, *OtherSIZE_t*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적인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총자산성장률이 높을수록,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코스닥상장기업일수록, 중소기업일수록, 기타 기업일수록 비정상감사보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나머지 통제변수들

은 모두 비유의적이었다. 이와 같이 통제변수의 분석결과는 종속변수가 $\ln AFee_t$ 인 경우와 $abAFee_t$ 인 경우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주로 $\ln AFee_t$ 의 경우에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Panel A-2는 관심변수가 비감사서비스보수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ln NASFee_t$ 의 회귀계수도 종속변수가 $\ln AFee_t$ 와 $abAFee_t$ 인 경우에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양(+)¹⁸⁾의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Panel A-1과 마찬가지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Panel B는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기준인 그룹1(*GR1*), 그룹2(*GR2*), 기타로 구분한 경우이다. Panel B-1는 비감사서비스 제공 여부, Panel B-2는 비감사서비스보수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NonASD_t$ 와 $\ln NASFee_t$ 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가 $\ln AFee_t$ 와 $abAFee_t$ 인 경우에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양(+)¹⁹⁾의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표 4〉의 전반적인 결과는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은 감사보수에 유의적인 양(+)²⁰⁾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설 1은 지지되는 결과이다.

4.3.2 가설 2의 분석결과

〈표 6〉은 식 (2)를 이용하여 가설 2를 검증한 회귀분석결과이다. 먼저, Panel A는 감사인 유형을 *Big4*, *One firm*, 기타로 구분한 경우의 분석결과이다. 가설 2의 관심변수인 $NonASD_t \times Big4_t$ 와 $\ln NASFee_t \times Big4_t$ 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가 $\ln AFee_t$ 와 $abAFee_t$ 인 경우에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양(+)²¹⁾의 값을 나타냈다. 또한 $NonASD_t \times Onefirm_t$ 과 $\ln NASFee_t \times Onefirm_t$ 의 회귀계수도 종속변수가 $\ln AFee_t$ 와 $abAFee_t$ 인 경우에 모두 1% 또는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양(+)²²⁾의 값을 나타냈다.¹⁸⁾ 이러한 결과는 *Big4* 감사인 또는 *One firm* 감사인인 경우에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 시 기타 감사인보다 감사보수를 더 많이 받게 되어 감사품질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⁹⁾ *One firm* 형태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우수하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재은(2011), 최진영 외(2013)와 일치한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Panel B는 감사인 유형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시 이용되는 감사인 구분기준에 따라

18)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다음의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부실감사 시 *One firm* 유형 감사인은 회계법인의 명성손실(Reputation Loss)에 대한 우려가 기타 감사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며, 게다가 한국의 공인회계사들은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특유의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송위험(Litigation Exposure)에 따라 LOS 체제를 갖춘 *One firm* 감사인의 경우에 전체 조직 또는 비감사 LOS에서 감사부서의 위험 수용을 승인하지 않는 상황이며, 특히 *One firm* 유형 감사인의 경우 회계감사 수입절차 및 내부 심리절차 등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셋째, *One firm* 유형의 경우 내부성과 평가로 인해 감사부서의 감사보수 할인 유인이 적게 된다. 넷째, *One firm* 유형 감사인의 경우에 감사보수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짐에 따라 감사보수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GR1을 *Big4*와 기타 회계법인(DSS)으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Big4*는 유의적인 양(+)²⁰⁾의 값을 나타냈지만 DSS는 비유의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회계 실무에서 DSS는 높은 감사수입 능력에도 불구하고 *One firm* 감사인이 아니므로 감사부서와 비감사서비스 부서 간의 분리가 실질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19) 본 연구에서 별도의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동일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Big4*와 *One firm*의 감사보수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식 (2)에 대해 기타 감사인을 기준으로 하는 대신에 *Big4*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Big4*와 *One firm*만으로 구성된 하위 부분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경우에도, 동일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 시 *Big4*와 *One firm*의 감사보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Non-Big4* 중에서도 *One firm* 유형 감사인의 감사보수로 측정된 감사품질은 적어도 *Big4* 수준의 감사 품질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시 사용하는 현행 기준을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감사인의 *One firm* 유형 여부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표 6〉 비감사서비스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인 유형별 차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가설 2 검증)

Panel A: 감사인을 *Big4*, *Onefirm*, 기타로 구분한 경우

$$AFee_t = \beta_0 + \beta_1 NonAS_t + \beta_2 Big4_t + \beta_3 Onefirm_t + \beta_4 NonAS_t \times Big4_t + \beta_5 NonAS_t \times Onefirm_t + Controls + \sum YD + \sum IND + \epsilon_t \quad (2-1)$$

변수명	Panel A-1		Panel A-2	
	<i>lnAFee_t</i> Coef. (t-value)	<i>abAFee_t</i> Coef. (t-value)	<i>lnAFee_t</i> Coef. (t-value)	<i>abAFee_t</i> Coef. (t-value)
<i>Intercept</i>	9.350(98.37)***	0.385(7.36)***	9.374(98.65)***	0.397(7.60)***
<i>NonAS_t</i>	0.023(2.38)**	0.015(2.80)***	—	—
<i>lnNASFee_t</i>	—	—	0.001(2.55)**	0.001(2.95)***
<i>Big4_t</i>	0.078(12.69)***	-0.012(-3.67)***	0.077(12.53)***	-0.013(-3.86)***
<i>Onefirm_t</i>	0.057(3.29)***	0.031(3.31)***	0.056(3.23)***	0.031(3.26)***
<i>NonAS_t × Big4_t</i>	0.071(5.74)***	0.034(5.03)***	—	—
<i>NonAS_t × Onefirm_t</i>	0.088(2.47)**	0.044(2.24)**	—	—
<i>lnNASFee_t × Big4_t</i>	—	—	0.004(5.98)***	0.002(5.22)***
<i>lnNASFee_t × Onefirm_t</i>	—	—	0.005(2.58)***	0.002(2.34)**
<i>Controls</i>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sum 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sum IN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F-Value	1066.55***	15.25***	1069.98***	15.93***
\bar{R}^2	0.7773	0.0446	0.7779	0.0466

Panel B: 감사인을 *GRI*, *GR2*, 기타로 구분한 경우

$$AFee_t = \beta_0 + \beta_1 NonAS_t + \beta_2 GR1_t + \beta_3 GR2_t + \beta_4 NonAS_t \times GR1_t + \beta_5 NonAS_t \times GR2_t + Controls + \sum YD + \sum IND + \epsilon_t \quad (2-2)$$

변수명	Panel B-1		Panel B-2	
	<i>lnAFee_t</i> Coef. (t-value)	<i>abAFee_t</i> Coef. (t-value)	<i>lnAFee_t</i> Coef. (t-value)	<i>abAFee_t</i> Coef. (t-value)
<i>Intercept</i>	9.254(96.81)***	0.376(7.21)***	9.279(97.11)***	0.388(7.44)***
<i>NonAS_t</i>	0.038(2.89)***	0.024(3.38)***	—	—
<i>lnNASFee_t</i>	—	—	0.002(3.07)***	0.001(3.54)***
<i>GRI_t</i>	0.053(7.45)***	-0.011(-2.87)***	0.052(7.35)***	-0.011(-2.98)***
<i>GR2_t</i>	0.021(1.96)*	0.012(1.99)**	0.021(1.94)*	0.012(1.98)**
<i>NonAS_t × GRI_t</i>	0.053(3.55)***	0.019(2.34)**	—	—
<i>NonAS_t × GR2_t</i>	-0.004(-0.16)	-0.004(-0.35)	—	—
<i>lnNASFee_t × GRI_t</i>	—	—	0.003(3.72)***	0.001(2.47)**
<i>lnNASFee_t × GR2_t</i>	—	—	0(-0.10)	0(-0.29)
<i>Controls</i>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sum 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sum IN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F-Value	1043.43***	14.31***	1047.02***	14.95***
\bar{R}^2	0.7735	0.0418	0.7741	0.0437

〈표 6〉 비감사서비스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인 유형별 차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가설 2 검증) (계속)

Panel C: 감사인을 *Big4*, *DSS*, *GR2*, 기타로 구분한 경우

$$AFee_t = \beta_0 + \beta_1 NonAS_t + \beta_2 BIG4_t + \beta_3 DSS_t + \beta_4 GR2_t + \beta_5 NonAS_t \times BIG4_t + \beta_6 NonAS_t \times DSS_t + \beta_7 NonAS_t \times GR2_t + Controls + \Sigma YD + \Sigma IND + \epsilon_t \quad (2-3)$$

변수명	Panel C-1		Panel C-2	
	<i>lnAFee_t</i> Coef. (t-value)	<i>abAFee_t</i> Coef. (t-value)	<i>lnAFee_t</i> Coef. (t-value)	<i>abAFee_t</i> Coef. (t-value)
<i>Intercept</i>	9.348(98.23)***	0.384(7.34)***	9.373(98.51)***	0.397(7.58)***
<i>NonAS_t</i>	0.038(2.90)***	0.024(3.38)***	—	—
<i>lnNASFee_t</i>	—	—	0.002(3.08)***	0.001(3.54)***
<i>Big4_t</i>	0.076(10.22)***	-0.013(-3.25)***	0.074(10.10)***	-0.013(-3.38)***
<i>DSS_t</i>	-0.011(-1.13)	-0.003(-0.62)	-0.010(-1.07)	-0.003(-0.58)
<i>GR2_t</i>	0.023(2.07)**	0.012(2.01)**	0.022(2.05)**	0.012(2.00)**
<i>NonAS_t × Big4_t</i>	0.056(3.73)***	0.025(3.01)***	—	—
<i>NonAS_t × DSS_t</i>	-0.022(-1.01)	-0.016(-1.30)	—	—
<i>NonAS_t × GR2_t</i>	-0.004(-0.17)	-0.004(-0.35)	—	—
<i>lnNASFee_t × Big4_t</i>	—	—	0.003(3.87)***	0.001(3.12)***
<i>lnNASFee_t × DSS_t</i>	—	—	-0.001(-1.08)	-0.001(-1.34)
<i>lnNASFee_t × GR2_t</i>	—	—	0(-0.10)	0(-0.29)
<i>Controls</i>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ΣYD</i>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ΣIND</i>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F-Value	1010.85***	13.97***	1014.05***	14.60***
R ²	0.7769	0.0428	0.7774	0.0448

Panel D: 감사인을 *Big4*, *Onefirm*, *DSS*, *sdGR2*, 기타로 구분한 경우

$$AFee_t = \beta_0 + \beta_1 NonAS_t + \beta_2 Big4_t + \beta_3 Onefirm_t + \beta_4 DSS_t + \beta_5 sdGR2_t + \beta_6 NonAS_t \times Big4_t + \beta_7 NonAS_t \times Onefirm_t + \beta_8 NonAS_t \times DSS_t + \beta_9 NonAS_t \times sdGR2_t + Controls + \Sigma YD + \Sigma IND + \epsilon_t \quad (2-4)$$

변수명	Panel D-1		Panel D-2	
	<i>lnAFee_t</i> Coef. (t-value)	<i>abAFee_t</i> Coef. (t-value)	<i>lnAFee_t</i> Coef. (t-value)	<i>abAFee_t</i> Coef. (t-value)
<i>Intercept</i>	9.346(98.30)***	0.384(7.34)***	9.371(98.58)***	0.396(7.58)***
<i>NonAS_t</i>	0.038(2.86)***	0.024(3.28)***	—	—
<i>lnNASFee_t</i>	—	—	0.002(2.97)***	0.001(3.37)***
<i>Big4_t</i>	0.080(10.66)***	-0.011(-2.69)***	0.079(10.53)***	-0.011(-2.83)***
<i>Onefirm_t</i>	0.059(3.32)***	0.033(3.36)***	0.058(3.28)***	0.032(3.32)***
<i>DSS_t</i>	-0.006(-0.66)	-0.001(-0.26)	-0.006(-0.62)	-0.001(-0.23)
<i>sdGR2_t</i>	0.023(2.01)**	0.010(1.58)	0.023(1.98)**	0.010(1.56)
<i>NonAS_t × Big4_t</i>	0.056(3.64)***	0.025(2.97)***	—	—
<i>NonAS_t × Onefirm_t</i>	0.073(1.98)**	0.035(1.72)*	—	—
<i>NonAS_t × DSS_t</i>	-0.023(-1.02)	-0.016(-1.29)	—	—
<i>NonAS_t × sdGR2_t</i>	-0.048(-1.76)*	-0.026(-1.71)*	—	—
<i>lnNASFee_t × Big4_t</i>	—	—	0.003(3.82)***	0.001(3.12)***
<i>lnNASFee_t × Onefirm_t</i>	—	—	0.004(2.09)**	0.002(1.82)*
<i>lnNASFee_t × DSS_t</i>	—	—	-0.001(-1.06)	-0.001(-1.30)
<i>lnNASFee_t × sdGR2_t</i>	—	—	-0.002(-1.68)*	-0.001(-1.64)
<i>Controls</i>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ΣYD</i>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ΣIND</i>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F-Value	965.53***	13.95***	968.61***	14.55***
R ²	0.7774	0.0448	0.7779	0.0468

주1) 표본크기: 11,601개 기업/연도

주2) *sdGR2_t* = t년도 감사인이 성도를 제외한 그룹2(환울, 이촌, 우리, 신우, 다산, 삼화)이면 1, 아니면 0;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2〉를 참조할 것.

주3) ***, **, * : 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양측검정).

$GR1$, $GR2$, 기타로 구분한 경우이다. $NonASD_t \times GR1_t$ 와 $lnNASFee_t \times GR1_t$ 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가 $lnAFee_t$ 와 $abAFee_t$ 인 경우에 모두 유의적인 양(+)
의 값을 나타냈다. 하지만 $NonASD_t \times GR2_t$ 와 $lnNASFee_t \times GR2_t$ 의 회귀계수는 모두 비유의적이었다. 따라서 가설 2는 $GR1$ 의 경우에 한하여 지지되었다.

그리고 Panel C는 $GR1$ 을 $Big4$ 와 DSS ($GR1$ 중 $Big4$ 이외의 3개 회계법인)로 세분하여 감사인 유형을 $Big4$, DSS , $GR2$, 기타로 구분한 경우의 분석결과이다. $NonASD_t \times Big4_t$ 와 $lnNASFee_t \times Big4_t$ 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가 $lnAFee_t$ 와 $abAFee_t$ 인 경우에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양(+)
의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NonASD_t \times DSS_t$ 와 $lnNASFee_t \times DSS_t$ 의 회귀계수 및 $NonASD_t \times GR2_t$ 와 $lnNASFee_t \times GR2_t$ 의 회귀계수는 모두 비유의적이었다. 결국 가설 2는 $Big4$ 의 경우에 한하여 지지되었다. 그런데 $GR1$ 감사인은 $Big4$ 와 DSS 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Panel C의 회귀분석결과를 참조하면 Panel B에서 나타난 $GR1$ 의 유의적인 분석결과는 결국 $Big4$ 의 효과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Panel D는 감사인 유형을 $Big4$, $One\ firm$, DSS , $sdGR2$, 기타로 구분하여 전체 감사인 유형을 모두 분석한 회귀분석결과이다. 가설 2의 검증변수인 $NonASD_t \times Big4_t$ 와 $lnNASFee_t \times Big4_t$ 의 회귀계수 및 $NonASD_t \times Onefirm_t$ 과 $lnNASFee_t \times Onefirm_t$ 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가 $lnAFee_t$ 와 $abAFee_t$ 인 경우에 모두 유의적인 양(+)
의 값을 나타냈다. 하지만 $NonASD_t \times DSS_t$ 와 $lnNASFee_t \times DSS_t$ 의 회귀계수는 모두 비유의적이었다. 또한 $NonASD_t \times sdGR2_t$ 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가 $lnAFee_t$ 와 $abAFee_t$ 인 경우에 모두 유의적인 음(-)
의 값을 나타냈으며, $lnNASFee_t \times sdGR2_t$ 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가 $lnAFee_t$ 인 경우에 유의적인 음(-)
의 값을 나타냈고 종속변수가 $abAFee_t$ 인 경우에 비유의적이었다. 따라서 전체 감사인 유형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2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동일 감사인에 의한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은 감사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가설 2는 감사인 유형이 $Big4$ 와 $One\ firm$ 의 경우에 지지되었다. 한편 DSS 와 그룹2($GR2$)의 경우가 비유의적이라는 실증분석결과는 현행 감사인지정제 하에서 단순히 회계법인의 규모나 회계사의 수, 매출액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인 유형을 그룹1($GR1$), 그룹2($GR2$), 기타(그룹3과 그룹4)로 구분하고 있는 것보다, 독립적인 심리실 운영, 감사품질 평가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체계, LOS (Line of Service)체계 구축, 업무수임과 위험 및 자금의 법인차원 통합관리 등 $One\ firm$ 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사인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의 품질관리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한 회계법인 대형화가 아니라 자금·회계·업무 수임을 법인차원에서 통합관리 및 집행하는 “ $One\ firm$ ” 유형 감사인의 육성을 지원하고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3.3 가설 3의 분석결과

〈표 7〉은 식 (3)을 이용하여 가설 3을 검증한 회귀 분석결과이다. 먼저, Panel A에서 식 (3-1)을 이용하여 감사인 유형을 $Big4$, $One\ firm$, 기타로 구분한 경우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Tax.Serv_t \times Big4_t$ 와 $NonTax.Serv_t \times Big4_t$ 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가 $lnAFee_t$ 와 $abAFee_t$ 인 경우에 모두 1%의 유의수준

에서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냈으며, $TaxServ_t \times Onefirm_t$ 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가 $lnAFee_t$ 와 $abAFee_t$ 인 경우에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가설 3은 *Big4*와 *One firm*의 경우에 지지되었다.

그리고 Panel A에서 식 (3-2)을 이용하여 감사인 유형을 *GRI*, *GR2*, 기타로 구분한 경우의 분석 결과, $TaxServ_t \times GRI_t$ 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가 $lnAFee_t$ 인 경우에만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냈고, $NonTaxServ_t \times GRI_t$ 의 회귀계수는 종속변

〈표 7〉 감사인 유형이 비감사서비스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감사서비스 유형별 차이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가설 3 검증)

Panel A: 감사인을 *Big4*, *Onefirm*, 기타 및 *GRI_t*, *GR2_t*, 기타로 구분한 경우

$$AFee_t = \beta_0 + \beta_1 Tax.Serv_t + \beta_2 Non.Tax.Serv_t + \beta_3 Big4_t + \beta_4 Onefirm_t + \beta_5 Tax.Serv_t \times Big4_t + \beta_6 Tax.Serv_t \times Onefirm_t + \beta_7 Non.Tax.Serv_t \times Big4_t + \beta_8 Non.Tax.Serv_t \times Onefirm_t + Controls + \sum YD + \sum IND + \epsilon_t \quad (3-1)$$

$$AFee_t = \beta_0 + \beta_1 Tax.Serv_t + \beta_2 Non.Tax.Serv_t + \beta_3 GRI_t + \beta_4 GR2_t + \beta_5 Tax.Serv_t \times GRI_t + \beta_6 Tax.Serv_t \times GR2_t + \beta_7 Non.Tax.Serv_t \times GRI_t + \beta_8 Non.Tax.Serv_t \times GR2_t + Controls + \sum YD + \sum IND + \epsilon_t \quad (3-2)$$

변수명	Model (3-1)		Model (3-2)	
	$lnAFee_t$ Coef. (t-value)	$abAFee_t$ Coef. (t-value)	$lnAFee_t$ Coef. (t-value)	$abAFee_t$ Coef. (t-value)
<i>Intercept</i>	9.360(98.30)***	0.391(7.47)***	9.265(96.76)***	0.383(7.33)***
<i>Tax.Serv_t</i>	0.011(0.86)	0.009(1.33)	0.039(2.34)**	0.024(2.70)***
<i>Non.Tax.Serv_t</i>	0.036(2.70)***	0.021(2.85)***	0.037(1.95)*	0.024(2.55)**
<i>Big4_t</i>	0.078(12.71)***	-0.012(-3.65)***	—	—
<i>Onefirm_t</i>	0.057(3.29)***	0.031(3.31)***	—	—
<i>Tax.Serv_t × Big4_t</i>	0.072(4.36)***	0.033(3.64)***	—	—
<i>Tax.Serv_t × Onefirm_t</i>	0.140(2.81)***	0.075(2.72)***	—	—
<i>Non.Tax.Serv_t × Big4_t</i>	0.067(4.15)***	0.034(3.81)***	—	—
<i>Non.Tax.Serv_t × Onefirm_t</i>	0.044(0.98)	0.018(0.74)	—	—
<i>GRI_t</i>	—	—	0.053(7.48)***	-0.011(-2.85)***
<i>GR2_t</i>	—	—	0.022(1.96)*	0.012(2.00)**
<i>Tax.Serv_t × GRI_t</i>	—	—	0.040(2.09)**	0.011(1.09)
<i>Tax.Serv_t × GR2_t</i>	—	—	-0.017(-0.50)	-0.011(-0.58)
<i>Non.Tax.Serv_t × GRI_t</i>	—	—	0.064(3.06)***	0.025(2.24)**
<i>Non.Tax.Serv_t × GR2_t</i>	—	—	0.006(0.19)	0(0)
<i>Controls</i>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sum 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sum IN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F-Value	988.92***	14.30***	967.27***	13.39***
\bar{R}^2	0.7774	0.0449	0.7735	0.0419

〈표 7〉 감사인 유형이 비감사서비스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감사서비스 유형별 차이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가설 3 검증) (계속)

Panel B: 감사인을 *Big4*, *DSS*, *GR2*, 기타 및 *Big4*, *Onefirm*, *DSS*, *sdGR2*, 기타로 구분한 경우

$$AFee_t = \beta_0 + \beta_1 Tax.Serv_t + \beta_2 Non.Tax.Serv_t + \beta_3 Big4_t + \beta_4 DSS_t + \beta_5 GR2_t + \beta_6 Tax.Serv_t \times Big4_t + \beta_7 Tax.Serv_t \times DSS_t + \beta_8 Tax.Serv_t \times GR2_t + \beta_9 Non.Tax.Serv_t \times Big4_t + \beta_{10} Non.Tax.Serv_t \times DSS_t + \beta_{11} Non.Tax.Serv_t \times GR2_t + Controls + \sum YD + \sum IND + \epsilon_t \quad (3-3)$$

$$AFee_t = \beta_0 + \beta_1 Tax.Serv_t + \beta_2 Non.Tax.Serv_t + \beta_3 Big4_t + \beta_4 Onefirm_t + \beta_5 DSS_t + \beta_6 sdGR2_t + \beta_7 Tax.Serv_t \times Big4_t + \beta_8 Tax.Serv_t \times Onefirm_t + \beta_9 Tax.Serv_t \times DSS_t + \beta_{10} Tax.Serv_t \times sdGR2_t + \beta_{11} Non.Tax.Serv_t \times Big4_t + \beta_{12} Non.Tax.Serv_t \times Onefirm_t + \beta_{13} Non.Tax.Serv_t \times DSS_t + \beta_{14} Non.Tax.Serv_t \times sdGR2_t + Controls + \sum YD + \sum IND + \epsilon_t \quad (3-4)$$

변수명	Model (3-3)		Model (3-4)	
	<i>lnAFee_t</i> Coef.(t-value)	<i>abAFee_t</i> Coef.(t-value)	<i>lnAFee_t</i> Coef.(t-value)	<i>abAFee_t</i> Coef.(t-value)
<i>Intercept</i>	9.359(98.17)***	0.391(7.45)***	9.360(98.28)***	0.392(7.48)***
<i>Tax.Serv_t</i>	0.039(2.34)**	0.024(2.70)***	0.041(2.46)**	0.025(2.78)***
<i>Non.Tax.Serv_t</i>	0.037(1.95)*	0.024(2.31)**	0.034(1.75)*	0.022(2.05)**
<i>Big4_t</i>	0.076(10.24)***	-0.013(-3.22)***	0.080(10.69)***	-0.011(-2.66)**
<i>DSS_t</i>	-0.011(-1.12)	-0.003(-0.62)	-0.006(-0.65)	-0.001(-0.25)
<i>GR2_t</i>	0.023(2.07)**	0.012(2.01)**	—	—
<i>Tax.Serv_t × Big4_t</i>	0.044(2.31)**	0.018(1.70)*	0.042(2.16)**	0.017(1.58)
<i>Tax.Serv_t × DSS_t</i>	-0.063(-2.02)**	-0.033(-1.93)*	-0.066(-2.10)**	-0.034(-1.99)**
<i>Tax.Serv_t × GR2_t</i>	-0.018(-0.53)	-0.011(-0.59)	—	—
<i>Non.Tax.Serv_t × Big4_t</i>	0.066(3.15)***	0.031(2.66)***	0.069(3.19)***	0.033(2.76)***
<i>Non.Tax.Serv_t × DSS_t</i>	0.007(0.25)	-0.003(-0.21)	0.010(0.34)	-0.001(-0.09)
<i>Non.Tax.Serv_t × GR2_t</i>	0.006(0.21)	0(0.01)	—	—
<i>Onefirm_t</i>	—	—	0.059(3.33)***	0.033(3.37)***
<i>sdGR2_t</i>	—	—	0.023(2.00)**	0.010(1.58)
<i>Tax.Serv_t × Onefirm_t</i>	—	—	0.110(2.15)**	0.058(2.09)**
<i>Tax.Serv_t × sdGR2_t</i>	—	—	-0.106(-2.63)***	-0.059(-2.65)***
<i>Non.Tax.Serv_t × Onefirm_t</i>	—	—	0.046(0.97)	0.017(0.66)
<i>Non.Tax.Serv_t × sdGR2_t</i>	—	—	-0.009(-0.28)	-0.004(-0.21)
<i>Controls</i>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sum 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sum IN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F-Value	919.38***	12.84***	863.63***	12.73***
\bar{R}^2	0.7770	0.0430	0.7775	0.0454

주1) 표본크기: 11,601개 기업/연도

주2) *sdGR2_t* = t년도 감사인이 성도를 제외한 그룹2(한울, 이촌, 우리, 신우, 다산, 삼화)이면 1, 아니면 0;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2〉를 참조할 것.

주3) ***, **, * : 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양측검정).

수가 $\ln AFee_t$ 와 $abAFee_t$ 인 경우에 모두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냈다. 하지만 $Tax.Serv_t \times GR2_t$ 와 $NonTax.Serv_t \times GR2_t$ 의 회귀계수는 모두 비유의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GRI*이 세무서비스의 제공보다는 비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더 많은 비정상감사보수로 전문성을 보상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Panel B에서 식 (3-3)을 이용하여 감사인 유형을 *Big4*, *DSS*, *GR2*, 기타로 구분한 경우의 분석결과이다. $Tax.Serv_t \times Big4_t$ 의 회귀계수와 $NonTax.Serv_t \times Big4_t$ 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가 $\ln AFee_t$ 와 $abAFee_t$ 인 경우에 모두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냈다. 하지만 $Tax.Serv_t \times DSS_t$ 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가 $\ln AFee_t$ 와 $abAFee_t$ 인 경우에 모두 유의적인 음(-)의 값을 나타냈고, $NonTax.Serv_t \times DSS_t$ 의 회귀계수는 비유의적이었다. 그리고 $Tax.Serv_t \times GR2_t$ 와 $NonTax.Serv_t \times GR2_t$ 의 회귀계수는 모두 비유의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Big4*가 비감사서비스의 전문성을 감사보수로 보상받고 있으며, *DSS*의 경우에는 세무서비스의 품질이 기타 감사인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Panel A의 식 (3-2)에서 $Tax.Serv_t \times GRI_t$ 의 회귀계수가 종속변수 $abAFee_t$ 인 경우에 비유의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DSS*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Panel B에서 식 (3-4)는 감사인 유형을 *Big4*, *One firm*, *DSS*, *sdGR2*, 기타로 구분하여 전체 감사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Tax.Serv_t \times Big4_t$ 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가 $\ln AFee_t$ 인 경우에만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냈으며, $NonTax.Serv_t \times Big4_t$ 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가 $\ln AFee_t$ 와 $abAFee_t$ 인 경우에 모두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냈다. 그리고 $Tax.Serv_t \times Onefirm_t$ 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가 $\ln AFee_t$ 와 $abAFee_t$ 인 경우에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냈다.

$NonTax.Serv_t \times Onefirm_t$ 의 회귀계수는 비유의적이었다. 또한 $Tax.Serv_t \times DSS_t$ 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가 $\ln AFee_t$ 와 $abAFee_t$ 인 경우에 유의적인 음(-)의 값을 나타냈고, $NonTax.Serv_t \times DSS_t$ 의 회귀계수는 비유의적이었다. 마지막으로 $Tax.Serv_t \times sdGR2_t$ 의 회귀계수도 종속변수가 $\ln AFee_t$ 와 $abAFee_t$ 인 경우에 유의적인 음(-)의 값을 나타냈지만, $NonTax.Serv_t \times sdGR2_t$ 의 회귀계수는 비유의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Big4*의 경우에는 세무서비스와 비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감사보수가 증가하며, *One firm*의 경우에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감사보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동일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과 감사보수 간의 관계에 감사인 유형이 미치는 영향이 비감사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4.3.4 추가분석결과

신용준 외(2010)는 감사보수와 비감사보수 간에 존재하는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하여 2SLS(two-stage least squares)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동일 감사인이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비감사보수와 감사보수 간에는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2SLS의 결과에서는 감사보수와 비감사보수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 결과를 근거로 향후 감사보수와 비감사보수 간의 연구시 내생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김범석(2015)은 내생성 통제기법을 이용하여 비감사서비스가 감사품질,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

은 경우 비감사서비스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은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었지만, 전후비교법을 통해 내생성을 통제한 경우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성향매칭점수기법과 Heckman 분석을 통해 내생성을 통제한 경우에는 비감사서비스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비감사서비스 제공과 종속변수인 감사보수 간에는 내생성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SLS 분석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해 재검정을 수행하였다.

먼저, 비감사서비스보수의 결정모형인 2SLS의 First Stage 연구모형은 김범석(2015)을 참조하여 다음의 식 (6)과 같이 설정하였다.

〈First Stage〉

$$\begin{aligned} \ln NASFee_t = & \alpha_0 + \alpha_1 RM_t + \alpha_2 BigA_t \\ & + \alpha_3 Z_SCORE_t + \alpha_4 FORN_t + \alpha_5 LARGE_t \\ & + \alpha_6 ROA_t + \alpha_7 MTB_t + \alpha_8 \ln Asset_t \\ & + \alpha_9 SalesGrw_t + \alpha_{10} LEV_t + \alpha_{11} INS_t \\ & + \alpha_{12} INC_t + \beta_{13} KDQ_t + \beta_{14} SmallSIZE_t \\ & + \beta_{15} OtherSIZE_t + \epsilon_t \end{aligned} \quad (6)$$

여기서,

$$RM_t = t\text{년도 실제이익조정으로 } (-1) \times \text{비정상 영업현금흐름과 } (-1) \times \text{비정상 재량적 비용의 합;}^{20)}$$

$$\begin{aligned} Z_SCORE_t &= t\text{년도 Zhang(2012)의 수정 } Z_SCORE;^{21)} \\ MTB_t &= t\text{년도 보통주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치;} \\ INS_t &= t\text{년도 관계회사매출을 총자산으로 나눈값;} \\ INC_t &= t\text{년도 관계회사 매입을 총자산으로 나눈값;} \\ &\text{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식 (1)을 참조할 것.} \end{aligned}$$

그리고 식 (6)의 실제이익조정은 Roychowdhury (2006)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비정상 영업현금흐름은 다음의 식 (7)과 같이 측정하였으며, 또한 비정상 재량적비용은 다음의 식 (8)과 같이 측정하였다.

$$\begin{aligned} CFO_t/A_{t-1} = & \alpha_0 + \alpha_1(1/A_{t-1}) + \beta_1(S_t/A_{t-1}) \\ & + \beta_2(\Delta S_t/A_{t-1}) + \epsilon_t \end{aligned} \quad (7)$$

여기서,

$$\begin{aligned} CFO &= t\text{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A_{t-1} &= t\text{기 기초총자산;} \\ S_t &= t\text{기 매출액;} \\ \Delta S_t &= t\text{기 매출액 변화분}(S_t - S_{t-1}); \\ \epsilon_t &= t\text{기 비정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end{aligned}$$

$$\begin{aligned} DISEXP_t/A_{t-1} = & \alpha_0 + \alpha_1(1/A_{t-1}) \\ & + \beta(S_{t-1}/A_{t-1}) + \epsilon_t \end{aligned} \quad (8)$$

여기서,

$$\begin{aligned} DISEXP &= t\text{기 재량적비용;} \\ A_{t-1} &= t\text{기 기초총자산;} \\ S_t &= t\text{기 매출액;} \\ \epsilon_t &= t\text{기 비정상 재량적비용.} \end{aligned}$$

20) 이익조정의 방향성을 (+)로 일치시키기 위해 비정상 영업현금흐름과 비정상 재량적비용에 각각 (-1)을 곱하였다.

21) Z SCORE는 Altman(1968)이 발전시킨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수치로 공식화한 기업파산예측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범석(2015)과 마찬가지로 Zhang(2012)이 수정한 Z SCORE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begin{aligned} Z_SCORE = & 0.3 \frac{Net\ Income}{Total\ Asset} + 1.0 \frac{Sales}{Total\ Asset} + 1.4 \frac{Retained\ Earnings}{Total\ Asset} \\ & + 1.2 \frac{Working\ Capital}{Total\ Asset} + 0.6 \frac{Stock\ Price \times Share\ Outstanding}{Total\ Liabilities} \end{aligned}$$

다음으로 2SLS의 Second Stage 연구모형으로
 는 본 연구의 가설 검정모형인 식 (1)부터 식 (3)까
 지의 모형을 각각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2SLS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가설 1부터 가설 3까지를 재검
 증한 결과, 기존 OLS의 분석결과와 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관계상 다음의
 식 (9)를 이용하여 전체 감사인을 대상으로 가설 2
 를 검증한 2SLS 분석결과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Second Stage〉

$$\begin{aligned}
 AFee_t = & \beta_0 + \beta_1 \ln NASFee_t + \beta_2 Big4_t \\
 & + \beta_3 Onefirm_t + \beta_4 DSS_t + \beta_5 sdGR2_t \\
 & + \beta_6 \ln NASFee_t \times Big4_t \\
 & + \beta_7 \ln NASFee_t \times Onefirm_t \\
 & + \beta_8 \ln NASFee_t \times DSS_t \\
 & + \beta_9 \ln NASFee_t \times sdGR2_t + Controls \\
 & + \sum YD + \sum IND + \epsilon_t \quad (9)
 \end{aligned}$$

〈표 8〉 2SLS Analysis : 비감사서비스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인 유형별 차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가설 2 검증)

감사인을 *Big4*, *Onefirm*, *DSS*, *sdGR2*, 기타로 구분한 경우

$$\begin{aligned}
 AFee_t = & \beta_0 + \beta_1 \ln NASFee_t + \beta_2 Big4_t + \beta_3 Onefirm_t + \beta_4 DSS_t + \beta_5 sdGR2_t \\
 & + \beta_6 \ln NASFee_t \times Big4_t + \beta_7 \ln NASFee_t \times Onefirm_t + \beta_8 \ln NASFee_t \times DSS_t \\
 & + \beta_9 \ln NASFee_t \times sdGR2_t + Controls + \sum YD + \sum IND + \epsilon_t \quad (9)
 \end{aligned}$$

변수명 (N = 11,601)	<i>lnAFee_t</i>	<i>abAFee_t</i>
	Coef. (t-value)	Coef. (t-value)
<i>Intercept</i>	10.247(37.46)***	0.841(5.96)***
<i>lnNASFee_t</i>	0.064(4.42)***	0.032(4.32)***
<i>Big4_t</i>	-0.022(-0.89)	-0.064(-4.94)***
<i>Onefirm_t</i>	0.047(1.37)	0.026(1.47)
<i>DSS_t</i>	-0.013(-0.72)	-0.006(-0.62)
<i>sdGR2_t</i>	0.016(0.73)	0.005(0.47)
<i>lnNASFee_t × Big4_t</i>	0.005(6.65)***	0.003(6.74)***
<i>lnNASFee_t × Onefirm_t</i>	0.007(1.82)*	0.003(1.85)*
<i>lnNASFee_t × DSS_t</i>	0(0.35)	0(0.40)
<i>lnNASFee_t × sdGR2_t</i>	0(-0.26)	0(-0.12)
<i>Controls</i>	included	included
$\sum YD$	included	included
$\sum IND$	included	included
F-Value	251.47***	4.59***
\bar{R}^2	0.4770	0.0129

주1) 표본크기: 11,601개 기업/연도

주2) *sdGR2_t* = t년도 감사인이 성도를 제외한 그룹2(환울, 이촌, 우리, 신우, 다산, 삼화)이면 1, 아니면 0;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2〉를 참조할 것.

주3) ***, **, * : 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양측검정).

여기서,

DSS_t = t년도 감사인이 그룹1 중 *Big4*를 제외한 3개 감사인(대주, 삼덕, 신한)이면 1, 아니면 0;

$sdGR2_t$ = t년도 감사인이 성도를 제외한 그룹2(한울, 이촌, 우리, 신우, 다산, 삼화)이면 1, 아니면 0;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식 (1)을 참조할 것.

식 (9)를 이용하여 가설 2를 분석한 2SLS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ln NASFee_t \times Big4_t$ 의 회귀계수와 $\ln NASFee_t \times Onefirm_t$ 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가 $\ln AFee_t$ 와 $abAFee_t$ 인 경우에 모두 유의적인 양(+)¹⁾의 값을 나타냈다. 하지만 $\ln NASFee_t \times DSS_t$ 의 회귀계수와 $\ln NASFee_t \times sdGR2_t$ 의 회귀계수는 모두 비유의적이었²⁾다. 따라서 2SL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본 연구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V. 결론

최근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일반적인 우려에 따라 비감사업무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이며, 국내 회계법인들의 LOS(Line of Service) 체제 구축 등 이해상충 방지 및 독립성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일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에 대해 언론 및 일반인의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 동시 제공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선행연구와 달리 감사인의 유형과 비감사서비스의 유형을 함께 고려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은 감사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동일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감사위험을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에 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고 더 열심히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은 감사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Big4*와 *One firm*은 감사보수가 증가하였으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시 가장 큰 감사인으로 분류되는 회계법인(*GRI*) 중 *Big4* 이외의 회계법인(*DSS*)과 두 번째 그룹의 회계법인(*GR2*)은 감사보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SS*와 *GR2*의 경우에는 감사보수와 관련이 없는 반면에 *Big4*와 *One firm*의 경우에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결과는 *Big4*와 *One firm* 감사인이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동일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과 감사보수 간의 관계에 감사인 유형이 미치는 영향은 비감사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Big4*는 세무서비스와 비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부분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ne firm*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감사보수와 유의적인 양(+)³⁾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SS*(*GRI* 중에서 *Big4*를 제외한 3개 회계법인)는 세무서비스 제공의 경우에 감사보수와 유의적인 음(-)⁴⁾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비세무서비스 제공의 경

우에는 비유의적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비세무서비스는 세무서비스보다 기업에게 더 많은 가치(value)를 제공하기 때문에, 감사인은 피감사기업과 경제적인 종속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보수의 협상력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ig4*는 서비스의 전문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비감사서비스 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 감사품질이 향상되며, *One firm*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감사품질이 향상되지만, *DSS*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감사품질이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감사보수를 증가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을 감사품질 제고의 기회로 삼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인의 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단순한 회계법인 대형화가 아닌 독립된 심리실과 LOS 체제 등을 갖춘 *One firm* 유형 감사인의 육성을 지원하고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지정대상회사의 자산규모 등 주로 양적 위주의 감사인 특성을 고려한 현행 지정방식에서 감사인 품질관리 수준에 따른 감사인 유형 구분 및 이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 개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감사인지정제 개선방안 외 실질적인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공개기업, 금융기관에의 감사인 배정제 우선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단순히 비감사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세무 유형(세무서비스 또는 비세무서비스 등) 구분에 의한 차별화

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감사인도 감사품질에 의한 독립성과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보수협상력을 높여 감사보수 현실화라는 당면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외부감사인이 수행한 비감사서비스 제공내역 및 보수 현황, 비감사서비스 제공과 감사품질과의 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과도한 비감사보수가 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일반적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채택한 *Big4*, *non-Big4* 감사인 유형 구분 외에 현행 실무상 감사인 특성을 고려한 *One firm* 감사인 여부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지정제 기준이 되는 감사인 그룹에 따른 유형 구분(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에 따라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과 감사보수 간의 관계에 감사인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비감사서비스의 유형(세무서비스와 비세무서비스) 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고문헌

- 권수영 · 손성규 · 이은철(2004),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29(2), 249-280.
- 금융감독원(2013.1.15.),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제도 도입 5년의 성과 및 과제.”
- 금융감독원(2014.6.26.), “최근 3년간 상장회사의 비감사 용역보수 현황분석.”
- 금융감독원(2014.9.1.), “2013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

- 고서 분석.”
- 금융감독원(2015.1.22.), “2014년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1.11.),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가기준(안).”
- 김명인·정민경·선우혜정(2013), “비정상감사보수 및 비정상 비감사보수가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 Khan and Watts(2009) 모형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49, 173-200.
- 김범석(2015), “내생성 통계기법을 이용한 비감사서비스가 감사품질,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박범진(2012), “비감사서비스 유형과 이익유연화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21(6), 257-286.
- 박범진·배기수(2013), “비감사서비스의 유형이 비정상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52, 101-120.
- 박종일·전규안·최종학(2003),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28(4), 141-176.
- 박종일·최관(2009), “비정상적인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10(3), 265-301.
- 배성미·김명인·안형태·지찬영(2014), “K-IFRS 의무 도입이 감사시장에 미치는 영향: 감사보수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39(6), 353-392.
- 손성규·이은철(2005),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해치는가?: 감사의견에측모형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447-470.
- 신용준·김은·권현주·김호중(2010), “감사보수와 비감사보수의 결합관계에 대한 연구,” **회계저널**, 19(5), 151-184.
- 심한택·손장익(2005),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회계정보의 유용성,” **회계와 감사연구**, 42, 1-27.
- 이명곤·이세철(2006), “비감사서비스로 인하여 할증된 감사보수와 감사품질,” **회계와 감사연구**, 44, 57-87.
- 이세용(2003),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연구: 감사보수를 중심으로,” **회계와 감사연구**, 39, 215-242.
- 이재은(2011), “감사인의 품질관리제도 영향 요소와 감사품질의 관련성: 금감원 품질관리감리 대상, 외국 회계감독기구 등록 여부 및 조직운영방식 유형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36(1), 125-181.
- 정대길·송인만·박연희(2009), “비감사서비스의 유형과 감사인의 독립성: 현행 규정에 의한 금지·조건부·허용된 비감사서비스를 기준으로,” **회계학연구**, 34(1), 143-170.
- 정대범·박희우(2006), “감사시간 공시의 적정성 연구,” **회계저널**, 15(3), 57-83.
- 조성훈(2014.5.19.), “대기업 감사보수 인하여 회계업계 부실감사 우려 목소리,” 머니투데이.
- 최관·박종일(2009), “비감사서비스 제공과 감사투입시간,” **회계와 감사연구**, 49, 313-355.
- 최원석·윤성만(2010), “비감사서비스의 반복성과 다양성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51, 293-319.
- 최진영·전영순·김문철·황문호(2013),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을 결정하는 회계법인 특성,” **회계저널**, 22(3), 297-328.
- 한국회계학회(2011. 12. 6.),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 홍준영·류지윤·윤성수(2006), “비감사서비스와 감사품질: 감사 투입시간 분석,” **회계저널**, 15(특별호), 69-89.
- 황문호(2013), “회계법인 특성이 감사보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22(2), 111-143.
- 황인태·강선민(2015), “지정감사에 대한 배정방법 개선방안,” 한국회계학회 심포지엄.
- Altman, E.(1968), “Financial Ratios, Discriminate Analysis and the Prediction of Corporate Bankruptcy,” *Journal of Finance*, 23(4), 589-609.
- Antle, R. E. A. Gordon, G. Narayanamoorthy, and

- L. Zhou(2002), "The Joint Determination of Audit Fees, Non-audit Fees and Abnormal Accruals," *Working Paper*, Yale University.
- Ashbaugh, H., R. Lafond, and B. W. Maydew(2003), "Do Non-audit Services Compromise Auditor Independence, Further Evidence," *Accounting Review*, 78(3), 611-639.
- Chung, J. H., and S. Kallapur(2003), "Client Importance, Nonaudit Services, and Abnormal Accruals," *The Accounting Review*, 78(4), 931-955.
- DeAngelo, L.(1981), "Auditor Size and Auditor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3), 183-199.
- Dee C., A. Lulseged, and T. Nowlin(2002), "Earnings Quality and Auditor Independence, An Examination Using Non-Audit Fee Data," *Working Paper*, Florida State University.
- DeFond, M., K. Raghunandan, and K. Subramanyam (2002), "Do Non-Audit Services Fees Impair Auditor Independence? Evidence from Going Concern Audit Opin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0, 1247-1274.
- Frankel, R., M. Johnson and K. Nelson(2002), "The Relation Between Auditor's Fees for Non-Audit Services and Earnings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77(s-1), 71-105.
- Palmrose, Z-V.(1986), "The Effect of Non-Audit Services on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2), 405-411.
- Roychowdhury, S.(2006),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al Activities Manipul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2(3), 335-370.
- Simunic, D. A.(1984), "Auditing, Consulting and Auditor Indepen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2(2), 679-702.
- Zhang, A.(2012), "Evidence on the Trade-off Between Real Activities Manipulation and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87(2), 675-703.

The Effects of Non-Audit Services on Audit Quality: A Focus on Auditor and Non-audit Services Type

Hyeon-Ju Ra* · Yong-Soo Kim** · Kyu-An Jeon***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the influence of simultaneously offering non-audit services on audit quality(audit fee). We conducted empirical tests on how different types of auditors influ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simultaneously offering audit and non-audit services and audit quality by categorizing different types of auditor.

Recent international trends focus on strengthening regulations against simultaneously providing non-audit services for fear of them hindering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or. While there are currently no country which specifically prohibits this, most countries only allow provision of non-audit services within a limited category in which there are very little cause for conflict of interests. A preceding research data puts forward contrasting results that assert that an audit quality is unaffected and the simultaneous provision of audit and non-audit services adversely affects an auditor's independence and thus compromise the quality of the audit. Therefore,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this paper conducted empirical tests on the influence of auditor's provision of audit and non-audit services on the audit fee while also considering the type of auditor and the type of non-audit services offered. Furthermore, unlike most existing studies, this study separated between the types of auditor types depending on Big4, non-Big4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also took into consideration one firm type auditors' characteristics in the empirical test. We also analyzed the influence of different types of non-audit servi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multaneous provision of audit and non-audit service and the

* Ph.D.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Vice-Chairman of Hanul Choongjung LLC, First Author

** Ph.D. Department of Accounting, Lecturer, Soongsil University, Co-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audit fee. Non-audit services were divided into types such as tax service and non-tax services. We selected total 11,601 firm/years from 2002 to 2013 as the samples, targeting non-financial companies of December 31 fiscal year-end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of the 2013 year-end and have done an empirical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s empirical tests are as follows. First, simultaneous provision of audit and non-audit services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the audit fee. Secon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influence exerted by the simultaneous provision of audit and non-audit services depending on the type of auditor. For example, Big4 and One firm showed significant and positive influence. While it also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f the Group1(GR1), Group2(GR2) showed no significant results. Division of Group1(GR1) into Big4 and DSS (herein referred to as Local Big3) did not result in any significant results for DSS. This is because the significance of Big4 largely influenced Group1(GR1) overall and in practice, despite DSS's ability to acquire audits, DSS does not divide audit and non-audit divisions like the Big4 and One firm, there have been numerous cases where the same partner provided both audit and non-audit services. Third, according to analysis of each type of non-audit services in influe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sion of audit and non-audit services and the audit fee,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ax services and non-tax services.

The current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January 1990 as a means to protect investors and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or from the free audit engagement contracts. The system takes into considering the auditor's special features and divides a number of auditors to the four groups. Then, the designated companies are allocated to the auditors. From December 2014, an amendment was passed for the relevant legislation requiring reasons for designations and this is forecasted to drastically increase the number of designated companies. As there are ongoing discussions on improving the appointment method, including through public hearings on February 2015, changes to the appointment method from categorizing auditors based on their quality assurances need to occur. In 2011,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iscussed improvement plans and basic auditor registration based on evaluation results and filling out an evaluation criteria to enhance and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external auditor.

Ultimately, securing transparent accounting and independence of auditors will help Korea step one step closer to becoming a transparent and fair society. As reinforcement of non-audit service related policies are being emphasized internationally, it appears to be the right time to differentiate different types of non-audit services, introduce quality assurance systems to improve independence of the auditor and study policy developments. It is hoped that the recently

discussed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system improvement plans and new appointment criteria based on different types of audits and other measures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become the most pressing directions.

Key words: Non-Audit Service, Audit Quality, Auditor Type, Non-audit Services Type

-
- 저자 라현주는 현재 공인회계사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및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에서 경영학박사를 취득하였다. 1989년부터 딜로이트안진, 삼일회계법인에서 2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ABC인증위원, 방송분쟁조정위원,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올회계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업무분야는 회계감사뿐 아니라 방송통신 및 문화체육 분야, 금융 및 부동산 개발분야, 공공분야 등이다.
 - 저자 김용수는 현재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강사로 재직 중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및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에서 경영학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비감사서비스,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기업지배구조, 이익조정, 이연법인세 등이다.
 - 저자 진규안은 현재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동 대학의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및 박사학위(경영학 전공)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비상장주식평가, 조세회피와 세무보고,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 감사품질, 비감사서비스, 감사인선임제도 등이다.